

정책연구자료 97-08, 118쪽, 1,000부

保健福祉統計年報 改編方案

桂勳邦

高敬煥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國民의 保健福祉와 삶의 質에 관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가 바로 保健福祉統計이지만, 保健福祉統計는 다른 分野의 統計에 비하여, 그리고 先進國에 비하여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保健福祉統計의 改善에 관심을 갖고 1995년에 “保健福祉統計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保健福祉統計年報의 體系와 內容을 改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건의 內容을 구체화한 것으로, 保健福祉統計年報의 體系와 內容을 평가하여 기존의 生産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체제를 利用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活用度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保健福祉部는 本 研究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建議案을 받아들여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발간하였다.

研究陣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협의하여 준 保健福祉部 李英浩 電算統計擔當官과 원고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하여 준 本院의 卞俗榮 研究委員과 張英植 研究委員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研究陣의 의견 일 뿐, 本 研究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要 約	7
I. 序 論	12
II. 保健福祉部門 統計生産 現況	15
1. 保健福祉統計 生産機關	15
2. 保健福祉部 統計生産體系	17
3.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統計生産現況	20
4. 기타 機關의 保健福祉部門 統計生産 現況	21
III. 保健福祉部 統計生産 體制	25
1. 統計生産體制	25
2. 電算統計擔當官室 業務	25
3. 統計係 業務 및 擔當 人力	26
IV. 1996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評價	30
1. 分類體系	30
2. 統計表	33
3. 評價結果의 改善點	43
V. 1997年度 保健福祉統計年報 改編(案)	47
1. 改善 및 改編의 範圍	47
2. 改編案의 主要 內容	47

VI. 向後 推進課題	62
1. 短期推進課題	62
2. 長期推進課題	65
參考文獻	68
附錄：1996年度 保健福祉統計年報の 統計表 檢討結果	69

表 目 次

〈表 II-1〉	保健福祉 吳 關聯統計 生産機關	16
〈表 II-2〉	保健福祉部 統計調査 現況(1997年末 現在)	17
〈表 II-3〉	保健福祉部 統計調査 最近 實施現況 (1997年末 現在)	18
〈表 II-4〉	保健福祉部 報告統計 現況(1997年末 現在)	19
〈表 II-5〉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一回限 一般統計調査 現況	21
〈表 II-6〉	其他 機關의 保健福祉關聯 指定 吳 一般統計 作成現況	22
〈表 IV-1〉	1996年 保健福祉統計年報 構成內容	32
〈表 IV-2〉	日本 厚生統計要覽의 統計分類體系	32
〈表 V-1〉	1996年 吳 1997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分類體系	48
〈表 V-2〉	削除 對象 統計表	49
〈表 V-3〉	追加 對象 國內 統計表	51
〈表 V-4〉	追加 對象 國際 統計表	53

要 約

1. 研究의 背景

-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는 1995년에 “保健福祉統計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基本課題를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개편
 - 신규통계의 개발
 - 보고통계의 보고방법 개선
 - 조사통계의 신뢰성 확보
 - 통합실시가 가능한 통계조사의 통합
 - 통계업무 전담조직 보장 및 확대
- 이러한 基本課題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조치로서, 保健福祉部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고 예산이 별로 소요되지 않으면서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編’을 선정하였음.

2.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善點

- 각 부문의 통계 중에서 國民의 保健福祉 및 삶의 質에 관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統計가 바로 保健福祉統計이며, 이 점이 保健福祉統計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保健福祉統計年報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保健福祉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狀況 把握, 保健福祉 政策樹立 및 政策研究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保健福祉分野의 國家 基本統計集으로 개선되어야 함.

가. 分類體系

-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大分類는 保健福祉部 室·局에 따랐으며, 室·局 單位의 조직이 바뀔 때마다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大分類도 바뀌어 왔음.
- 이는 大分類 설정의 기본원칙이 行政便宜에 있었다는 것이 되며, 이러한 실정에서 中分類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음.

나. 統計表

- 活用도가 거의 없는 통계표가 있음.
 - 國家 基本統計로 국민의 保健福祉 政策樹立 및 評價, 政策研究, 삶의 質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의 변화과약 등에 활용되지 않는 통계표가 있음.
- 信賴性이 없는 통계표가 있음.
 - 필요한 통계표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統計年報에 수록함으로써 오히려 現實把握에 잘못을 초래하는 통계표가 있음.
- 不適當한 항목이 있음.
 - 일부 통계표에는 活用도가 없는 項目, 基本統計로 부적당한 項目, 正確性에 문제가 있는 項目이 있음.
- 필요한 통계표가 누락되어 있음.
 - 保健福祉部 및 관련 機關은 물론 다른 部處 및 機關에서 생산

하고 있는 保健福祉 관련 統計 중에서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할 만한 통계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를 발굴하여 추가하여야 함.

- 1990년 前後의 통계표가 있음.
 - 國際統計로는 16개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1990년 前後의 통계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음.
 - 국내 통계표 중에도 이러한 통계표가 있음.

다. 題目, 脚註 및 資料의 出處

- 題目을 보면 통계표에 수록된 統計의 內容, 範圍, 分類形態, 年度(時點), 地域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이용자가 통계의 이용에 오해가 없도록 脚註는 자세하게 추가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疑問事項이나 보다 자세한 內容을 알고자 할 때 편리하도록 資料의 出處도 추가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3. 保健福祉統計年報 改善·改編案의 主要 內容

가. 分類體系

- 室·局 단위에 따른 大分類 체계를 機能에 따른 분류체계로 전환하여 7개의 大分類를 설정하고, 대분류 내에서는 총 31개의 中分類를 설정하였음.
- 이러한 分類體系는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 가능한 통계

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통계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補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表 1〉 1996年 및 1997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分類體系

1996년 통계연보	1997년 통계연보 대분류 및 중분류 (안)	
I. 주요지표	I. 인구	(1) 인구 및 인구증가 (2) 인구동태
II. 보건	II. 보건	(1) 국민건강 (5) 의료이용
III. 식품		(2) 예방 및 전염병관리 (6) 약정
IV. 의정		(3) 공중 및 식품위생 (7) 보건산업
V. 약정		(4) 의료자원
VI. 사회복지	III. 사회복지	(1) 일반사회복지 (5) 아동복지
VII. 가정복지		(2) 공공부조 (6) 여성복지
VIII. 연금보험		(3) 장애인복지 (7) 부랑인복지
IX. 기타 국내통계		(4) 노인복지 (8) 정신질환자복지
X. 국제통계	IV. 사회보험	(1) 공공연금 (3) 산재보험
		(2) 의료보험 (4) 고용보험
	V. 생활환경	(1) 경제활동 (4) 가정의례
		(2) 가계지출 (5) 환경오염
		(3) 주택 및 가구
	VI. 재정·경제	(1) 예산 (2) 주요 경제지표
	VII. 국제통계	(1) 인구 (3) 의료자원
		(2) 사회보장비

나. 削除 對象 統計表

-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197개 통계표 중에서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59개 통계표를 삭제하였음.

다. 追加 對象 統計表

- 현재 保健福祉部 內部資料 및 다른 機關의 통계 중에서 45개 통계표를 선정하여 추가하였으며, 國際統計로는 OECD 國家의 保健

福祉統計로 한정하여 16개 통계표를 추가하였음.

라. 統計表 順序

- 新分類體系에 따라 1997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構成(案)을 마련하였음.

4. 向後課題

가. 短期推進課題

- ① 保健福祉統計年報의 미비점 보완
- ② 報告統計의 개선

나. 中長期課題

- ① 新規統計의 지속적인 개발
- ② 長短期 改善·發展計劃 수립 및 추진
 - 통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 신규통계의 지속적인 개발
 - 통계의 질적 개선
 - 통계의 활용도 제고
 - 시도의 보건복지통계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 ③ 統計業務 全擔組織 보강 및 확대
 - 통계담당 全擔人力的 증원
 - 통계업무 專門人力的 확보
 - 현재의 통계계를 國內統計係와 國際統計係로 분리
 - 일본 厚生省의 統計情報部와 같이 局 수준으로 확대 개편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國際化 時代에서 統計의 重要性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國際競爭力 向上을 위한 國家 政策樹立 및 事業計劃 樹立에는 통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保健福祉部門 統計는 先進國에 비하여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는 1995년에 OECD의 保健統計作成 基準에 관한 研究와 保健福祉統計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를 실시하였으며, 保健福祉統計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基本課題를 제시하였다.

- (1) 保健福祉統計年報의 개편
- (2) 新規統計의 개발
- (3) 報告統計의 보고방법 개선
- (4) 調査統計의 신뢰성 확보
- (5) 統合實施가 가능한 통계조사의 統合
- (6) 통계업무 全擔組織 補强 및 擴大

이와 같은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는 그 후속 연구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保健福祉統計의 改善은 기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 자체가 活用價値가 없는 研究가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1995년 研究에서 제시한 課題 중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의 ‘保健福祉統計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에서 제시한 課題 중의 하나인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編’을 첫 번째

推進課題로 택하게 되었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善·改編方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954년에 創刊號가 발간된 후 42년간 한번도 改編되지 않아 낙후되어 있는 保健福祉統計年報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改編하기 위한 것이다.

3. 研究의 內容

본 연구는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編과 向後 保健福祉統計 改善의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의 내용으로 하였다.

- ① 保健福祉統計의 생산현황
- ②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평가
- ③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개편방안
- ④ 향후 推進課題

4. 研究方法

保健福祉部門의 통계는 保健福祉部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保健福祉部門의 統計生産現況 把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善·改編에 관하여는 각 부문의 통계 중에서 國民의 保健福祉 및 삶의 質에 관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가 바로 保健福祉部門의 統計이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통계의 特殊性을 전제로 우선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매 통계표마다 수록항목의 適合性 및 活用性, 항목별 統計値의 妥當性, 題目, 脚註, 資料의 出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계표별로 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分類體系를 검토하여 改善方向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整理結果를 토대로 分類體系를 재설정하고 削除對象 통계표, 追加對象 통계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97年度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善·改編案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에 건의하였다.

保健福祉部에서는 이 改善·改編案을 토대로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를 개편하게 되었다.

II. 保健福祉部門 統計生産 現況

1. 保健福祉統計 生産機關

가. 統計法에 의한 保健福祉 關聯統計 作成機關

統計法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調整하고 統計 體系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統計制度 運用의 효율성 確保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1997년말 현재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統計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指定統計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統計로서 統計廳長이 지정하여 告示하는 統計를 말한다.
- ③ 一般統計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指定統計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
- ④ 統計作成機關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指定統計와 一般統計의 실제적인 차이점은 指定統計의 경우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資料의 提出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법에는 指定統計 또는 一般統計를 작성하고자 하는 機關의 長

은 그 통계작성 및 公表에 관하여 미리 統計廳長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統計法에 의한 승인을 받아 保健福祉統計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주된 기관은 國民의 保健福祉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保健福祉部이지만, 이밖에도 統計廳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韓國保健社會研究院과 기타 기관에서도 保健福祉分野의 국민생활환경과 관련되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保健福祉와 관련되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은 <表 II-1>과 같으며, 이들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保健福祉와 관련되는 指定統計 및 一般統計는 約 100種이 된다.

<表 II-1> 保健福祉 및 關聯統計 生産機關(1997年末 現在)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통계청	노동부	한국석유개발공사
총무처	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보호원
과학기술처	경찰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부	국세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무부	관세청	보험감독원
교육부	대검찰청	한국생산성본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의료보험관리공단
농림부	철도청	의료보험연합회
통상산업부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건설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보건복지부	한국담배인삼공사	

나. 기타 統計作成機關

統計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 이외에도 國防部, 法務部, 報勳處,

産業人力管理工團, 障碍人雇傭促進公團 등에서도 보건복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 保健福祉部 統計生産體系

保健福祉部에서 1997년말 현재 統計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통계는 調査統計가 8種이며 報告統計는 26種이다. 그리고 調査統計 8種 중에서 指定統計는 障碍人實態調査와 國民營養調査의 2개 조사뿐이다.

가. 調査統計 現況

統計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統計調査 8種의 조사명, 담당부서, 조사주기는 <表 II-2>와 같다.

<表 II-2> 保健福祉部 統計調査 現況(1997年末 現在)

통계조사	과	주기
1. 환자조사	전산통계담당관실	3년
2. 특수조사	"	"
3.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과	5년
4. 저소득층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생활보호과	3년
5. 생활보호대상자조사	"	1년
6. 국민영양조사	보건정책과	3년
7. 전국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	5년
8. 전국 결핵실태조사	방역과	"

이 表에서 첫 번째의 患者調査는 醫療機關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두 번째의 特殊調査는 3년 주기인 患者調査의 중간 연도

에 실시하는 조사로서, 1993년에는 癌患者調査를 실시하였고 1995년에는 嬰兒死亡調査를, 1997년에는 母性死亡調査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醫療機關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3번째 조사부터는 모두 家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8種 統計調査의 최근 실시연도는 <表 II-3>과 같다.

<表 II-3> 保健福祉部 統計調査 最近 實施現況(1997年末 現在)

조 사 명	조사 주기	최근 실시연도	실시방법
1. 환자조사	3년	'96	자체적으로 실시
2. 특수조사	3년	'97	"
3. 생활보호대상자조사	1년	'97	"
4. 국민영양조사	3년	'95	"
5. 장애인실태조사	5년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
6. 저소득층 최저생계비계측조사	3년	'94	"
7. 전국 기생충감염실태조사	5년	'97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 ¹⁾
8. 전국 결핵실태조사	5년	'95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 ¹⁾

註: 1)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부담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種은 자체적으로, 2種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용역으로, 나머지 2種은 保健福祉部の 예산부담으로 韓國健康管理協會 및 大韓結核協會에서 실시하였다.

나. 報告統計 現況

保健福祉部에서 생산하고 있는 1997年 11月末 現在의 報告統計는 26種이며, 13個 課에서 작성하고 있다. 26種의 報告統計를 작성주기별로 분류하면 每月이 1種, 分期가 16種, 半期가 5種, 年1회가 4種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表 II-4>와 같다.

〈表 II-4〉 保健福祉部 報告統計 現況(1997年末 現在)

작성부서	통계명칭	주기	승인일자
1 생활보호과	생활보호실적보고	분기	76-12-07
2 "	부랑인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분기	96-10-16
3 장애인제도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현황	매년	95-06-09
4 "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분기	96-10-16
5 보육아동과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분기	94-01-26
6 "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보고	분기	88-03-22
7 "	아동상담현황보고	분기	88-03-22
8 "	국내 입양현황	반기	89-03-18
9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분기	96-10-16
10 여성복지과	여성지도사업실적보고	반기	81-12-03
11 "	여성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반기	81-12-03
12 "	여성회관 운영상황	매년	81-12-03
13 구강보건과	구강보건사업현황보고	반기	81-12-03
14 방역과	법정전염병환자월보	매월	75-07-26
15 "	국제검역상황	분기	81-12-03
16 "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	분기	76-12-30
17 "	나병관리사업 실적보고	분기	96-10-16
18 "	성병관리사업 실적보고	매년	96-10-16
19 생활보건과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	분기	76-12-30
20 "	공중위생업소실태보고	분기	97-04-11
21 식품정책과	식품위생업소실태보고	분기	76-12-07
22 의료정책과	의료기관 실태보고	매년	75-07-29
23 지역의료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반기	81-12-03
24 약무진흥과	의약품등 생산실적보고	반기	75-07-29
25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분기	96-10-16
26 정신보건과	정신질환자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분기	96-10-16

이러한 報告統計는 다음과 같은 報告體系에 따라 합산·보고된다.

① 동읍면 → 구시군 → 시도 → 보건복지부

- ② 해당 기관 → 구시군 → 시도 → 보건복지부
- ③ 해당 기관 → 보건소(구시군) → 시도 → 보건복지부
- ④ 구시군 → 시도 → 보건복지부
- ⑤ 보건소(구시군) → 시도 → 보건복지부
- ⑥ 해당 기관 → 협회 → 보건복지부
- ⑦ 산하 기관 → 보건복지부

3.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統計生産現況

가. 定期的 統計調査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1997년 12월말 현재 統計法의 승인을 받아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와 國民健康 및 保健意識行態調査의 2種이 있다.

이 2種의 調査는 모두 조사주기가 3년으로,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를 실시한 다음 연도에 國民健康 및 保健意識行態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는 統計法의 指定 統計調査이다.

나. 1回限 統計調査(非繼續 統計調査)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은 統計法에 의한 指定機關이므로, 주기적인 조사가 아닌 1회로 끝나는 조사의 경우에도 統計法에 따라 統計廳長의 승인을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관한 공표도 협의를 받고 있다. 統計法의 1回限 一般統計로 1993년 이후에 실시한 統計調査는 12種이 있으며, 그 내역은 <表 II-5>와 같다.

〈表 II-5〉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一回限 一般統計調査 現況

연도	조사명칭	보고서명
1 1993	- 가정의례에 관한 국민의식 행태조사	• 가정의례에 관한 국민의식 행태조사 보고서
2 1994	- 노인생활실태조사	• 노인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3 1994	- 묘지제도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	• 묘지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4 1995	- 아동복지 수용시설 기초조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관리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5 1995	- 원격진료사업 분석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 '94 원격진료 시범사업 분석평가
6 1995	- 특수 의약품개발 및 수급 실태조사	• 특수약품 개발 및 수급전략
7 1995	- 장애인 취업실태 및 산재 장애인 조사	•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9 1995	- 아동복지수용시설 기초조사	•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8 1996	- 식품판매업소의 쇼케이스 및 소비자조사	•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유통구조개선
10 1996	- 산재병원 입원환자 및 직원의식조사	• 산재전문 종합병원 및 산재의료 전문교육기관 건립에 관한 연구
11 1997	- 표준약국모형개발을 위한 약국실태조사	• 표준약국모형개발연구
12 1997	- 치매노인실태조사	•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4. 기타 機關의 保健福祉部門 統計 生産現況

保健福祉부와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이외에도 指定統計 또는 一般統計 작성기관 중에서 保健福祉部門의 생활환경과 관련되는 통계를 생

산하는 기관으로는 統計廳을 비롯한 정부기관(12개 기관) 및 비정부기관(5개 기관)이 있으며, 이에 관한 현황은 <表 II-6>과 같다.

<表 II-6> 其他 機關의 保健福祉關聯 指定 및 一般統計 作成現況

기관명	통계명칭	간행물명	발간주기
통계청	- 인구총조사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년
	- 주택총조사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년
	- 인구동태조사	• 인구동태통계연보	1년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연보	1년
	- 사회통계조사	• 한국의 사회지표	1년
	-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의 사회지표	1년
	- 생명표	• 생명표	부정기
	- 추계인구	• 추계인구	부정기
	- 도시가계조사	• 도시가계연보	1년
	- 소비자 물가조사	• 소비자물가, 물가연보	1년
	- 인구이동조사	• 인구이동통계연보	1년
	- 가구소비실태조사	•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5년
	총무처 환경부	- 공무원총조사	• 공무원통계
- 수질오염실태보고		• 환경통계연감	1년
- 환경오염도 자동측정		• 환경통계연감	1년
- 해수수질실태보고		• 환경통계연감	1년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 환경통계연감	1년
- 상수도통계		• 상수도	1년
- 하수도통계		• 하수도	1년
- 환경보존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환경보존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보고	5년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 전국폐기물통계	5년
내무부		- 화재발생총괄표	• 화재통계연보
	- 한국도시연감자료조사	• 한국도시연감	1년
교육부	- 학생신체검사통계보고	• 교육통계연보	1년
	- 교육통계조사	• 교육통계연보	1년

〈表 II-6〉 계 속

기관명	통 계 명 칭	간 행 물 명	발간주기	
문화체육부	- 국민체력실태조사	• 국민체력실태조사	1년	
	-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3년	
	-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향수실태조사	3년	
농림부	- 농업총조사	• 농업총조사	5년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통계연보	1년	
	- 양곡소비량조사	• 농가경제통계연보	1년	
	- 농업기본통계조사	• 농업기본통계	1년	
	- 우유 및 유제품 생산 및 소비상황	• 낙농편람	1년	
	- 농업기본통계조사	• 농업기본통계	1년	
	- 광산재해통계	• 광산재해통계연보	1년	
통상산업부	- 에너지총조사	• 에너지총조사결과 보고서	5년	
	- 자동차등록현황조사	• 건설교통통계연보	1년	
건설교통부	- 해난사고현황	• 건설교통통계연보	1년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년	
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년	
	-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 근로자 생계비조사보고서	1년	
	- 사업종류별 보험적용 징수상황보고	• 노동통계연감	1년	
	- 산업재해조사	• 산업재해분석	1년	
	-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상황보고	• 산업재해분석	1년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분석	1년	
	- 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장애인고용실태조사보고서	1년	
	해양수산부	- 어가경제조사	• 어가경제통계연보	1년
		- 어업기본통계조사	• 어업기본통계	1년
		- 어업총조사	• 어업총조사보고서	5년

〈表 II-6〉 계 속

기 관 명	통 계 명 칭	간 행 물 명	발간주기
경찰청	- 월중교통사고 발생상황	• 교통사고분석	1년
국세청	- 세입징수총보고서	• 국세통계연보	1년
관세청	- 무역통계	• 무역통계연보	1년
대검찰청	- 범죄분석통계	• 범죄분석	1년
산림청	- 산림기본통계	• 임업통계연보	1년
	- 산림피해 및 부정 임산물 단속상황보고	• 임업통계연보	1년
철도청	- 여객사고통계	• 철도통계연보	1년
한국은행	- 국민계정	• 국민계정	1년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1년
한국담배인삼공사	- 담배소비실태조사	• 〈미발간〉	2년
한국석유개발공사	- 석유수급통계	• 석유수급통계	1년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생활지표조사	•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3년
	-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조사	•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조사	3년
한국표준과학원	- 국민신체측정조사	•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5년
보험감독원	- 보험통계	• 보험통계연감	1년
한국생산성본부	- 노동생산성지수	• 생산성리뷰	분기
의료보험관리공단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통계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통계연보	1년
의료보험연합회	- 의료보험통계	• 의료보험통계연보	1년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성향조사	• 생명보험성향조사	3년

Ⅲ. 保健福祉部 統計生産 體制

1. 統計生産體制

保健福祉部の 統計生産體制는 각 과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分散型 生産體制이다. 이와 관련하여 企劃管理室 소속의 電算統計擔當官室에서는 각 과의 통계작성 및 결과공표에 관하여 承認, 調整, 協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電算統計擔當官室 業務

電算統計擔當官室에는 統計行政業務를 담당하는 統計係, 電算業務를 담당하는 電算係, 行政資料管理業務를 담당하는 行政係가 있으며, 각 係의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統計行政業務

- (1) 통계자료의 수집·집계·분석 및 결과공표
- (2) 통계관계서식의 종합·조정 및 승인
- (3) 통계연보의 발간
- (4) 부내 및 소속기관의 조사업무 승인 및 종합·조정
- (5) 부내 및 소속기관의 통계작성 승인 및 공표·조정

② 電算業務

- (1) 통계자료의 전산처리
- (2) 행정전산화·자동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전자계산기의 운영관리

③ 行政資料 管理業務

- (1) 행정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
- (2) 행정자료의 국제교환
- (3)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 (4) 자료집의 발간
- (5) 행정기록부 관리
- (6) 정부간행물의 발간 심의 및 등록
- (7) 보건사회백서 발간

3. 統計係 業務 및 擔當 人力

가. 統計係 業務

統計係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統計行政業務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統計行政業務는 (1) 통계의 생산, (2) 통계연보의 발간, (3) 각 室·局 통계업무의 조정, (4) OECD 요구 보건복지부문 통계제공의 4개 업무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統計의 生産

統計係에서는 끝단위가 짝수 연도인 2년마다 醫療機關을 통한 患者 調査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患者調査 중간 연도에는 特殊調査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3년에는 癌患者調査를 실시하였으며, 1995년에는 嬰兒死亡 調査를, 1997년에는 母性死亡 調査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992년부터 매년 1개의 대규모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2) 統計年報의 發刊

통계를 생산하는 각 室·局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여 매년 保健福祉統計年報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연보발간업무는 사무관을 포함하여 2명이 담당하고 있다.

3) 各 室·局 統計業務의 調整

(1) 調査統計業務의 檢討 및 調整 : 각 室·局에서 새로운 통계조사를 실시하거나 統計法의 승인을 받은 주기적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電算統計擔當官室에서 그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室·局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며, 保健福祉部 統計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정해진 절차를 밟아 統計廳에 統計法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한다(용역으로 하는 통계조사, 保健福祉部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산하 단체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2) 報告統計業務의 檢討 및 調整 : 각 室·局에서 報告統計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報告統計의 작성주기 및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統計擔當官室(統計係)에서 검토하고, 統計廳에 統計法에 따른 통계작성 또는 변경 승인신청을 한다.

(3) 統計作成結果의 公表協議 : 報告統計든 調査統計든 각 室·局的 통계작성 결과에 대하여도 統計擔當官室(統計係)에서 統計廳에 統計法에 따른 공표협의 신청을 한다(調査統計의 경우 필요에 따라 保健福祉部 統計委員會의 심의절차를 거침).

이러한 각 室·局 統計業務의 조정은 주로 保健福祉部 統計業務規程(1997)에 의한 것이다.

(4) 統計委員會의 運營 : 保健福祉 統計작성계획안 및 결과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소속으로 統計委員會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운영은 電算統計擔當官室(統計係)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 관한 구성과 심의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委員長(보건복지부 차관), 副委員長(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및 委員(보건복지부 본부 각 국장, 관련분야의 전문가)으로 구성되며, 幹事는 電算統計擔當官이고 서기는 統計擔當(統計係長)이다. 이 위원회는 保健福祉統計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통계의 작성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계획안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사통계 결과표의 검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계업무의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統計係의 업무 중에서 통계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량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통계연보의 발간업무이고 각 室·局 통계업무의 조정에 관한 업무량은 사실상 미미할 정도이다.

4) OECD 要求 保健福祉統計 提供

우리나라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함에 따라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OECD에서 요구하는 統計의 提供業務는 1997년부터 새로 늘어난 업무이다.

OECD에서는 1997년에 保健部門의 경우에는 996개 항목의 1960~1996년까지의 통계제공을 요구하였으며, 福祉部門의 경우에는 社會保障費에 관한 98개 항목의 1980~1996년까지의 통계제공을 요구하였다. 또한 保健部門의 경우에는 1998년에 425개 항목이 증가한 1,421개 항목의 통계제공을 이미 요구하였다.

나. 統計係 人力

1997년 12월말 현재 統計係의 인원은 係長(事務官) 이외에 保健職 2명, 電算職 1명, 技能職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保健福祉部 각 실·국에서 작성한 통계를 취합하여 統計年報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定期調査(3년 주기의 患者調査)와 特殊調査(1993년 癌患者調査, 1995년 嬰兒死亡調査, 1997년 母性死亡調査)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항상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保健福祉統計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1997년부터는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제공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業務量 過重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의 電算統計擔當官室은 1975년에 企劃管理室 소속의 行政管理擔當官室 統計係가 統計擔當官室로 분리·승격되고 1995년에 電算統計擔當官室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行政管理擔當官室 統計係 시절의 統計係 인원은 어쨌든 하나의 係이므로 係長과 적어도 직원 3명은 되었을 것이며, 당시의 統計係의 업무는 統計年報를 발간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때의 統計係 업무와 지금의 統計係 업무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保健福祉部 본부에서는 循環勤務制로 2~3년마다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는데 統計係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다른 課의 통계업무 담당자도 2~3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統計業務 擔當者의 專門性 確保 및 統計改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IV. 1996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評價

1. 分類體系

1996년도 保健福祉統計年報에는 179개 통계표와 29개 도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구성내용은 <表 IV-1>과 같다.

<表 IV-1> 保健福祉統計年報(1996年)의 構成內容

대분류	대분류명	통계표수	도표수	통계생산부서
I	주요지표	4	2	기획관리실 및 외부 기관
II	보건	40	6	보건국(3개 표 기획관리실)
III	식품	10	2	식품국
IV	의정	30	4	의정국
V	약정	8	1	약정국
VI	사회복지	13	1	사회복지심의관실
VII	가정복지	17	1	가정복지심의관실
VIII	연금보험	18	3	연금보험국
IX	기타 국내통계	21	3	외부 기관
X	국제통계	16	2	외부 기관

<表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分類 II~VIII은 保健福祉部의 室·局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흥미있는 사실이다.

保健社會部가 保健福祉部로 改編되기 이전인 1994년 9월에 발간된 1994년 保健社會統計年報에는 醫療保險과 國民年金이 각각 별개의 大分類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保健福祉部로 개편되면서 醫療保險局과 國民年金局이 年金保險局으로 統廢合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 이후에 발간된 1995년 保健福祉統計年報에는 醫療保險과 國民年金の 2개 大分類가 年金保險의 1개 大分類로 통합되었다. 室·局單位 組織이 改編됨에 따라 保健福祉部 統計年報의 大分類가 組織에 맞추어 함께 바뀐 것은 1995年度の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過去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構成이 組織이 개편될 때마다 그에 따라 함께 바뀐다는 것은 결국 保健福祉部の 統計年報는 각 室·局에서 작성한 統計를 그대로 취합하여 나열하였다는 것이 되며, 이는 이용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성만 고려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既存의 保健福祉統計年報는 保健福祉部 各 室·局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弘報 目的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國民의 保健福祉 現況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없다.

“1982년 봄, 주한 세계보건기구 자문관 윌리엄스가 연세대학교에서 한 강연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보건기획이 없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건기획이 아니고 각 국과에서 제출한 것을 취합함에 불과하고 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시키기 위한 진정한 기획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였다.”(양재모·유승흠, 1984:163)

그런데 保健福祉統計年報의 경우 아직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循環勤務制 및 專門人力不足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지만,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課題이다.

다음의 <表 IV-2>는 日本 厚生統計要覽에서 택하고 있는 통계의 分類體系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保健福祉統計年報와 비교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V-2〉 日本 厚生統計要覽의 統計分類體系

대분류	중분류
1. 인구, 가구	(1) 인구 (2) 인구동태 (3) 가구
2. 보건위생	(1) 공중위생 및 환경위생 (2) 의료 (3) 노인보건 (4) 약사
3. 사회복지	(1) 공적부조 (2) 아동복지 (3) 심신장애자복지 (4) 노인복지 (5) 기타
4. 사회보험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3) 기타 사회보험
5. 사회보장 등	(1) 사회보장 (2) 기타

첫째, 日本의 厚生統計要覽은 局單位의 체제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라 통계의 종류 및 기능에 따라 5개의 大分類로 구성되었으며, 大分類에서는 다시 中分類를 설정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保健福祉統計年報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각 室·局에서 제출한 통계를 그대로 취합한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통계의 大分類는 保健福祉部의 室·局(보건, 위생, 의정, 약정, 사회복지, 가정복지, 연금보험)과 일치되게 마련이며, 따라서 保健福祉部가 생산하지 않는 통계는 ‘기타 국내통계’라는 별도의 大分類를 설정하여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構成하기는 쉬웠으나 活用하기에는 불편하며, 日本의 경우는 構成하기에는 어려웠으나 活用하기는 편리하게 되어 있다.

둘째, 日本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물론이고 이에 추가하여 관련되는 통계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의 行態나 特性에 관한 통계도 생산하는 등 각종 보건복지정책의 수립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日本의 경우는 그 제목에 單位事業의 實績에 관한 통계는 거의 수록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8개 통계표가 그 제목에 ‘실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單位事業의 實績에 관한 통계표이다.

2. 統計表

保健福祉統計年報가 보건복지부문의 國家基本統計集이므로 국민의 保健福祉環境 및 ‘삶의 質’과 관계되는 國家 基本統計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표가 수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각 통계표를 검토하였으며, 세부적인 검토결과는 附錄(통계표 검토결과)에 수록하였다.

가. 統計表의 妥當性

保健福祉統計年報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계표가 있으며,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收錄 目的을 알 수 없는 統計表

〈예〉 제29표 나병원 및 나장애시설 설립현황

- 5개 癲病院(국립소록도 병원, 애양재활병원, 애락보건병원, 성좌원, 성심인애병원)과 1개 癲障礙施設(다미안의 집)에 대하여 각각 시설면적, 동수, 설립구분, 설립연도, 소재지 등 5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표이다. 통계연보에 이러한 표를 수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수록여부를 떠나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애락보건병원’이란 기관은 없으며, ‘애락보건병원 부속의원(요양기호 - 37322192, 전화 053-564-0701)’인 것으로 보여짐.
 - 복지병원(대한 나관리협회 부속, 경기도 의왕시 소재, 가톨릭

재단의 성라자로원과는 다른 기관)은 누락되었음.

- 애양재활병원의 경우 동일한 재단에 애양재활병원, 평안양노원, 직업재활보도소의 3개 기관이 있음.
 - 애양재활병원 : 나환자 및 일반환자의 수술후 입원 치료 및 외래진료 의료기관이며, 피부과 전문병원임.
 - 평안양노원 : 노인 나환자 수용시설로 복지시설임.
 - 직업재활보도소 : 나장애인 및 일반장애인 복지시설 성격의 직업훈련시설임.

② 빈칸이 대부분인 統計表

〈예〉 제12표 제1종 전염병환자 월별, 시도별 발생수 및 사망수

- 제1종 주요 傳染病(5종 -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디프테리아, 세균성 이질)의 發生 및 死亡件數가 1995년의 月 및 시도별로 수록된 통계표이다.
- 統計數值가 없는 빈칸이 89%나 되며(1,632개 중에서 1,511개), 분량이 4쪽이나 된다.
- 이러한 통계표는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特殊 目的의 통계표이다.

③ 한 團體의 事業實績에 관한 統計表

〈예〉 제37표 성인병 등 검진사업 실적

- 韓國健康管理協會 13개 檢診센터의 6개 연도(1985, 1990~1995)의 成人病(자궁암, 고혈압, 심장기능, 당뇨병, 신장기능, 간장기능, 빈혈, 간염, 성병, 기타) 檢診實績을 수록한 통계표이다.
- 통계표의 제목이 成人病을 위주로 한 檢診事業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이 그런지는 알 수 없다.
-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인지 알 수 없다.
 - 몇 종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실적으로 성인병

을 위주로 집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 特定 疾患 하나만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대부분의 검진은 疾患의 範圍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1사람이 2개의 질환(예 : 당뇨병 및 간염)과 관련 될 때 어떤 질환으로 분류하였는지 알 수 없다(질병별 검진실적의 합계가 총검진실적과 일치한다).
- 이 통계표는 韓國健康管理協會의 검진사업실적통계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④ 活用도가 거의 없는 統計表

〈예〉 제22표 결핵연령별 양성반응률

- 이 통계표는 1975~1995년의 기간 중 5년마다 실시한 結核實態 調査에서 BCG 非接種者(반흔이 없는 사람)에 대한 튜버구린 反應檢査 결과의 陽性反應率을 0~29세까지의 5세 간격으로 제시한 통계표이다.
- 이러한 검사결과는 結核實態調査 과정의 한 部分의 檢査結果에 불과하므로 일반 이용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표이다.

⑤ 特殊 目的의 統計作成基準을 適用한 統計表

〈예〉 제127표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실적

- 이 통계표는 8개 연도(1980, 85, 90, 92~95)의 醫療保險 被保險者와 被扶養者에 대하여 각각 입원 및 외래별로 實人員, 診療件數 및 延人員을 수록하고 1995년도 통계는 이를 療養診療와 分娩診療로 나누어 추가한 통계표이다.
- 그러나 이 통계표의 내용은 療養機關이 被保險者와 被扶養者에 대한 診療費用으로 청구한 診療費請求明細書를 醫療保險聯合會가 심사 처리한 月別 實績에 의한 통계이므로, 一般的 統計作成基準과는 다른 개념의 통계이다.

- 예를 들면, 한 의료기관에서 매달 1번씩 3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매달 診療費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審査하기 때문에 진료건수는 3건으로 집계되지만, 어떤 달에 3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건수는 1건으로 집계된다.
- 따라서 여기의 통계는 月別 診療費 審査實績統計이며, 진료건수의 개념이 의료이용통계에서 말하는 입원건수와 외래진료건수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⑥ 收錄 內容이 현실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統計表

〈예〉 제5표 영양섭취량(1인 1일당)

- 이 통계표는 8개 연도(1975, 80, 85, 90~94)의 국민 1인당 1일 영양섭취량을 열량(kcal), 단백질(g), 지방(g)으로 나누어 각각 섭취량, 권장량, 권장량 대비 섭취량 등을 수록한 통계표이다.
- 이 表에서 열량(kcal)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열량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섭취량(1)	1,992	2,052	1,935	1,868	1,930	1,875	1,848	1,770
권장량(2)	2,129	2,194	2,125	2,085	2,075	2,085	2,053	2,082
(1) / (2) : %	93.6	93.5	91.1	90.0	93.1	90.0	90.0	85.0

- 이 表에서 1992~94년까지 국민 1인당 熱量攝取量이 1,900 kcal도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1994년 1,770 kcal).
- 勸獎熱量이 매년 작성되는 것이 아님에도 매년의 勸獎熱量이 다르게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산출된 권장량인지 알 수 없다.
- 우리나라 국민이 熱量勸獎量의 90% 정도(1994년의 경우 85%)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⑦ 統計가 作成機關의 行政目的으로만 사용되는 統計表

〈예〉 제79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

- 이 통계표는 18개 연도(1975~1992)의 不正醫療業者 團束實績을 違反件數(9種의 分類)와 處理件數(8種의 分類)로 나누어 수록한 통계표이다.
- 그런데 이러한 實績統計는 감시·감독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므로 작성기관 내부의 행정자료로만 의미가 있다.

⑧ 너무 오래 전의 統計로 活用價値가 없는 統計表

〈예〉 제39표 소아발육치

- 이 통계표는 성별로 각각 7세 미만 月齡階級 및 7~20세까지의 연령에 대하여 1965, 1975, 1985년도의 평균 체중 및 신장을 수록한 통계표이다.
- 그러나 너무 오래전의 통계이므로 1985년도 이후의 통계가 추가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통계이다.

〈예〉 국제통계

- 국제통계로는 16개 통계표(제161표~제176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1990년 전후의 통계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통계표이다(1980년대 통계표 - 1개 표, 1990년 전후 통계표 - 12개 표).

나. 統計項目의 妥當性

保健福祉統計年報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이 있다.

① 月別 統計의 경우

〈예〉 제138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 이 통계표에는 1990~95년까지의 각 연도의 國民年金基金 運用 實績의 累積統計가 세부 내용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1995년의 경우에는 月別 累積統計도 수록되어 있다.
- 이 표에서 月別 累積統計는 일반 이용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統計이다.

② 全國 標本調査結果에 의한 市道別 統計의 경우

〈예〉 제34표 장내 기생충검사 현황

- 이 통계표에는 5개 연도(1971, 76, 81, 86, 92)에 걸쳐 실시한 전국 腸內寄生蟲 感染實態調査 결과의 12種(회충, 구충, 편충, 동양모양 선충, 간흡충, 폐흡충, 요꼬가와흡충, 조충, 요충, 기타)의 腸內寄生蟲에 대하여 각각 蟲卵 陽性者數와 陽性率이 제시되었으며, 1992년도(마지막 연도)의 경우에는 시도별 통계도 제시되었다.
-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시도별 推定值 算出을 전제로 標本이 설계된 것도 아니며, 또한 시도별로는 標本調査區數가 근본적으로 적어서(예: 3개 시도는 5개 조사구 이하, 9개 시도는 10개 조사구 이하) 시도별 推定值는 標本誤差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통계이다.

③ 行政遂行의 中間過程의 統計가 收錄된 경우

〈예〉 제157표 사회복지관계 대학원 학과별 학생수(1995학년도)

- 이 통계표에는 1995학년도의 사회복지분야의 학과별 대학원 학생수(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생)가 수록되어 있으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지원자수와 신입생수도 수록되어 있다.
- 이 표에서 지원자수는 통계연보에 수록될 정도의 국가 기본통계가 아니다.

④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른 統計表의 統計가 다시 收錄된 경우

〈예〉 제87표 의약품 약효별 생산 현황

- 이 통계표는 1995년도의 藥效(용도)별 의약품 생산실적(품목수 및 생산액)을 수록한 통계표이며, 총품목수 및 총생산액은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다.
- 이 표에서 연도별 통계는 제86표(의약품 등 생산현황)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 표에서는 1995년도의 합계만 있으면 된다.

⑤ 機關 單位의 統計가 收錄된 경우

〈예〉 제17표 공항 및 해항 예방접종 상황

- 이 통계표는 9개 연도(1975, 80, 85, 90~95)의 주요 傳染病(콜레라, 페스트, 황열)에 대한 空港 및 海港 檢疫所의 豫防接種實績을 수록하고, 마지막 연도인 1995년의 경우에는 13개 檢疫所別 實績도 수록한 통계표이다.
- 여기서 검역소별 실적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통계일 뿐이다.

⑥ 제시된 統計値가 무슨 뜻을 갖는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예〉 제107표 경로당 이용현황

- 이 통계표에는 4개 연도(1992~95)의 敬老堂數와 利用老人數가 제시되었으며, 1995년의 경우에는 시도별 통계도 제시되었다.
- 이 表에서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경로당수	이용노인수	연도	경로당수	이용노인수
1992	21,601	1,004,177	1994	25,316	1,147,544
1993	23,430	1,073,752	1995	28,068	1,244,380

- 여기서 利用老人數는 어떤 뜻의 利用老人數인지 알 수가 없다. 즉 경로당에 거의 매일 나가는 경우, 일주일에 한 두번 나가는 경우, 한달에 한 두번 나가는 경우 등 나가는 횟수가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집계된 노인수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다. 統計表 順序

같은 종류의 통계표는 한 부분에 같이 있어야 하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152표(산업별 취업자)는 제148표(경제활동인구) 다음의 통계표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사이에는 전혀 성질이 다른 제149표(17대 분류에 의한 성·연령별 사망자수), 제150표(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 제151표(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의 3개 표가 있다.

라. 統計表 간의 一致性

통계표 A와 통계표 B가 연관성이 있어 통계표 B의 어떤 항목의 統計値는 통계표 A의 여러 개 항목의 統計値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103표(장애인복지시설 수용현황)의 첫 번째 항목인 시설수는 제102표(장애인복지시설별 현황)의 총시설수에서 비수용시설(종합복지관 및 단종복지관)수를 뺀 결과의 시설수(지체부자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장애인 요양, 기타 등 6개 항목의 시설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나, 일치하지 않고 있다(수용인원의 경우는 일치함).

마. 項目配列의 合理性

項目配列이 너무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18표(결핵환자 보건소 등록상황)의 ‘① 계, ② 신환, ③ 재발, ④ 중단후 재등록,

⑤ 전입, ⑥ 기타, ⑦ 관리전환, ⑧ 요관찰'의 항목순서에서 왜 중간에 '⑥ 기타'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 構成 項目

하나의 통계표에는 같은 종류의 항목 또는 관련되는 항목의 통계가 수록되어야 하나, 전혀 성질도 다르고 관계도 없는 2종류의 통계가 수록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175표(에너지 소비량 및 국민영양공급량, 1990)에는 1차 에너지(고체, 액체, 가수, 전력) 消費量과 국민 1인당 1일 營養供給量의 전혀 다른 種類의 統計가 수록되어 있다.

사. 統計表 題目

통계표의 제목을 보면 그 통계표에 수록된 통계의 내용, 범위, 분류 형태, 연도(시점) 등을 알 수 있어야 하나, 거의 대부분의 통계표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을 예로 들었다.

① 目次の 題目과 統計表의 題目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제14표

- 목차 : 제1종 전염병환자 연령계층별 이환율 및 치명률
- 본문 : 제1종 전염병환자 연령계층별 발생률 및 치명률

② 統計表의 題目과 內容이 一致하지 않는 경우

〈예〉 제159표 주거부대시설별 주택수

- 이 통계표는 1990년 人口住宅總調査 結果의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로 각각 煖房施設別(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단독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중앙난방, 재래

식 아궁이, 전기보일러 등) 주택수를 수록한 통계표이다.

- 제목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나 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주택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주택수 - 1995년 : 시부·군부별

③ 題目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예〉 제115표 여성회관 운영상황

- 女性會館 運營狀況의 運營狀況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 이 통계표에는 7개 연도(1985, 90~95)의 訓練課程別(양재, 미용, 수예, 편물 등의 12개 과정) 入所者數 및 修了者數와 總脫落者數 및 年末 在所者數가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연도인 1995년의 경우에는 시도별 통계도 수록된 통계표이다.
- 따라서 제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여성회관 입소자수 및 퇴소자수 - 훈련과정 및 연도별, 시도별

④ 題目에 統計의 對象을 알 수 없는 경우

〈예〉 제54표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감시실적(업종별)

- 어떤 제품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실제로 통계표에 제시된 제품은 과자류, 장류 등의 加工食品이다.
- 따라서 제목의 ‘제품검사’는 ‘가공식품검사’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 검사,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감시실적 : 연도별, 가공식품별

아. 資料의 出處

이용자가 통계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거나 疑問

點이 있을 때 각 통계표마다 資料의 出處가 있으면 관련자료를 찾아 보거나 관계기관에 問議하여 확인할 수가 있으나 대부분 資料의 出處가 없다.

자. 脚註

이용자가 統計의 利用에 誤解 또는 錯誤가 없이 이용하도록 자세한 脚註가 있어야 하나, 脚註가 미비된 경우가 많이 있다.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55표(의사면허등록상황)에는 ‘한지의사’란 항목이 있는데, 일반 이용자는 ‘한지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를 알지 못한다.

제125표(의료보험조합 및 적용인구)에서 地域·職種組合의 適用人口의 경우에 8개 연도(1980, 85, 89, 90, 92~95) 중에서 被扶養者는 1985년도에만 있는데, 왜 1985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被扶養者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차. 英文

英文은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內容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161표(인구지표의 국제비교)에서 性比를 ‘Sex ratio’라 하지 않고 ‘Females per 100 males’라 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 하면 性比는 ‘Males per 100 females’의 뜻이기 때문이다.

3. 評價結果의 改善點

保健福祉統計年報는 보건복지 및 관련 분야의 綜合적이고 체계적인

狀況 把握, 保健福祉 政策樹立 및 評價, 政策研究 등에 기초자료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保健福祉部門의 國家基本統計集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 分類體系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大分類는 保健福祉部 室·局에 따랐으며, 室·局 單位의 組織이 바뀔 때마다 이에 따라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大分類도 바뀌어 왔다.

이는 大分類 體系의 기본원칙이 行政便宜에 있었다는 것이 되며, 이러한 실정에서 중분류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따라서 機能 위주의 大分類體系로 전환하고 각 大分類別로 中分類를 설정하여야 이용하기에 편리한 統計年報가 된다.

나. 收錄範圍

1) 國內統計

가) 活用도가 낮은 統計表와 不適當한 項目의 削除

國家 基本統計로 국민의 保健福祉 政策樹立 및 評價, 政策研究, 삶 의 質과 관계되는 生活環境의 變化把握 등에 활용되지 않는 통계표는 삭제한다. 또한 필요한 통계표라 하더라도 正確性에 문제가 있는 통계표는 現實把握에 잘못을 초래하게 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나) 不適當한 項目의 削除

기존 통계표에서 活用도가 없는 항목, 基本統計로 부적당한 항목,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여야 한다.

다) 新規 統計表의 追加

保健福祉部는 물론 다른 部處 및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保健福祉 關聯 統計중에서 保健福祉統計年報에 國家基本統計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를 발굴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2) 國際 統計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되는 國際統計는 OECD 國家의 保健福祉 統計로 한정하고 점진적으로 그 範圍를 확대하여야 한다.

처음 단계에서 OECD 國家의 통계로 한정시키는 이유는, OECD 會員國에는 선진국 전부가 포함되어 있고 개발도상국 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OECD의 保健福祉部門 統計作成基準에 따라 우리나라 保健福祉統計의 國際標準化 作業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기준에서 선진국 및 다른 개발도상국의 통계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題目

제목을 보면 통계표에 수록된 統計의 內容, 範圍, 分類形態, 年度(時點), 地域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脚註 및 資料의 出處

이용자가 統計의 利用에 誤解가 없도록 脚註는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疑問事項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 편리하도록 資料의 出處도 추가하여야 한다.

마. 英文

英文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다른 內容으로 이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修正·補完하여야 한다.

V. 1997年度 保健福祉統計年報 改編(案)

1. 改善 및 改編의 範圍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編은 몇 개월에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補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한된 인력과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세부적인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997년에는 基本體制의 구축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통계표와 분류체계를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에 따라 保健福祉統計年報 改善 및 改編計劃(案)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진산통계담당관실)에 건의하였다.

保健福祉部に 건의한 保健福祉統計年報 改善·改編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改編案의 主要 內容

가. 分類體系

기존의 분류체계는 室·局 單位에 따라 10개 大分類로만 되어 있고 中分類는 없었다. 따라서 다음의 <表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機能 위주로 7개의 大分類를 설정하고 총 31개의 中分類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分類體系는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 가능한 통계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통계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表 V-1〉 1996年 및 1997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分類體系

1996년 통계연보	1997년 통계연보	
	대분류	중분류
I. 주요지표	I. 인구	(1) 인구 및 인구증가
II. 보건		(2) 인구동태
III. 식품	II. 보건	(1) 국민건강
IV. 의정		(2) 예방 및 전염병관리
V. 약정		(3) 공중 및 식품위생
VI. 사회복지		(4) 의료자원
VII. 가정복지		(5) 의료이용
VIII. 연금보험		(6) 약정
IX. 기타 국내통계		(7) 보건산업
X. 국제통계	III. 사회복지	(1) 일반사회복지
		(2) 공공부조
		(3) 장애인복지
		(4) 노인복지
		(5) 아동복지
		(6) 여성복지
		(7) 부랑인복지
		(8) 정신질환자복지
	IV. 사회보험	(1) 공공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V. 생활환경	(1) 경제활동
		(2) 가계지출
		(3) 주택 및 가구
		(4) 가정의례
		(5) 환경오염
	VI. 재정·경제	(1) 예산
		(2) 주요 경제지표
	VII. OECD 국가의 주요 보건복지 통계	(1) 인구
		(2) 사회보장비
		(3) 의료자원

나. 削除 對象 統計表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197개 통계표 중에서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통계표, 즉 삭제대상 통계표로는 다음의 <表 V-2>와 같이 59개 통계표를 선정하였다.

삭제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관하여는 附錄(통계표 검토결과)에서 해당되는 통계표의 검토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表 V-2> 削除 對象 統計表

대분류	통계표번호	통계표명
I. 주요지표	제1표	인구지표
	제2표	주요 보건복지지표
II. 보건	제5표	영양섭취량(1인 1일당)
	제10표	제1종 전염병환자 월별 발생수 및 사망수
	제11표	제1종 전염병환자 시도별, 발생수 및 사망수
	제12표	제1종 전염병환자 월별 시·도별 발생수 및 사망수
	제13표	제1종 전염병환자 연령계층별 발생수 및 사망수
	제14표	제1종 전염병환자 연령계층별 발생률 및 치명률
	제21표	비시지 연령별 접종률
	제22표	결핵 연령별 양성반응률
	제24표	결핵균 양성폐결핵 연령별 유병률
	제26표	에이즈 항체검사 현황
	제28표	나환자등록현황 및 역학적 현황 : 발생, 유병, 사망
	제38표	구강보건 사업실적
	제42표	공중위생관계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제43표	공중위생관계업소 위생감시 실적(업종별)
	III. 식품	제47표
제48표		식품접객(조리, 집단)업소 위생감시 실적(업종별)
제49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제50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감시 실적(업종별)
제51표		식품판매 운반 처리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제52표	식품판매 운반 처리업소 위생감시 실적(업종별)

〈表 V-2〉 계속

대분류	통계표번호	통계표명	
Ⅲ. 식품	제53표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감시실적(시도별)	
	제54표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감시실적(업종별)	
Ⅳ. 의정	제67표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및 약사분포 현황	
	제71표	의료기관종별 입원·외래 환자수 및 구성비	
	제72표	상병분류별, 성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제73표	의료기관종별, 거주지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제79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	
	제79-1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의료인등)처리 건수	
	제79-2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의료기관)처리 건수	
	Ⅴ. 약정	제89표	약사감시 상황(시·도별)
제90표		약사감시 상황(업체별)	
Ⅶ. 가정복지	제119표	새마을 부녀회 조직현황	
Ⅷ. 연금보험	제127표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실적	
	제128표	의료보험 대상자 질병 17대분류별 수진건수	
	제128-1표	의료보험 대상자 질병 21대분류별 수진건수	
	제129표	의료보험 급여상황	
	제130표	의료보험 관련 지표	
	제133표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진료실적	
	Ⅸ. 기타	제145표	시부 및 군부인구
		국내통계	제147표
제149표		17대 분류에 의한 성, 연령별 사망자수(분류가능)	
Ⅹ. 국제통계	제161표	인구지표의 국제 비교	
	제162표	인구동태	
	제163표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제164표	평균 수명	
	제165표	출생아수 및 출생 성비	
	제166표	영아사망률	
	제167표	모성사망률	
	제168표	연령별 사망률	
	제169표	의료종사자 수	
	제170표	OECD국가의 주요사망 원인별 사망률	

〈表 V-2〉 계속

대분류	통계표번호	통계표명
X. 국제통계	제171표	OECD국가의 보건관련 지출비(1990)
	제172표	1인당 GNP
	제173표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지니계수
	제174표	주거현황 및 상수도과 전기 보급률
	제175표	에너지 소비량 및 국민영양 공급량(1990)
	제176표	실업률

다. 追加 對象 統計表

현재 保健福祉部 내부자료 및 다른 機關의 統計 중에서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에 수록되어야 할 45개 국내 통계표를 〈表 V-3〉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國際統計로는 〈表 V-4〉와 같이 OECD 國家의 保健福祉統計로 한정하여 16개 통계표를 선정하였다.

國際統計의 경우 OECD 國家의 統計로 한정한 이유는 OECD의 保健福祉部門 統計作成基準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의 國際標準化 作業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기준에서 선진국의 통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表 V-3〉 追加 對象 國內 統計表

번호	통계표명
01	평균연령 및 평균수명추이 : 1960~2020
02	사망자수 - 주요 사망원인별 : 1991~1994
03	혼인 및 이혼 : 1970~1995
04	식품공급량(1인 1일당) : 1970~1995
05	쌀 및 육류소비량(1인 1일당) : 1970~1995
06	영양공급량(1인 1일당) : 1970~1995

〈表 V-3〉 계속

번호	통계표 명
07	암유병자수 및 유병률 - 성 및 부위별 : 1992
08	주류 출고량(20세 이상 1인당) : 1970~1995
09	흡연인구비율(20세 이상) : 1992, 1995
10	음주인구비율(20세 이상) : 1992, 1995
11	건강관리방법(15세 이상) : 1992, 1995
12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자 급여총액 : 1981~1995
13	생활보호 대상자 경제활동상태 : 1996
14	생활보호가구 - 보호종류별, 주요 특성별 : 1990~1996
15	이재민 발생 및 구호실적 : 1990~1996
16	재가장애인의 성 및 연령 - 장애종류별 : 1995
17	재가장애인 취업률 및 취업희망비율 : 성 및 연령별
18	등록장애인수 및 의무고용 준수사업체수 : 1990~1995
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 시설종류별 : 1991~1996
20	공공연금 가입자수 및 적용률 - 연금형태별 : 1980~1995
21	공공연금 수급권자수 - 연금형태별 : 1985~1995
22	공공연금 총급여비 및 평균급여비 : 1980~1995
23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비율 : 1970~1995
24	산재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산업별 : 1988~1995
25	산재보험 급여 지급건수 - 급여종류별 : 1975~1995
26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 - 급여종류별 : 1975~1995
27	산업재해 발생상황, 도수율, 강도율, 만인율 : 1975~1995
28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 1995
29	고용보험 기금운영실적 : 1995
3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 및 시도별 : 1995
3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 - 종사인원 규모 및 산업별 : 1995
32	의료보험 부담액 및 급여액 - 시도별 : 1985~1996
33	일반가구의 주택형태 : 1970~1995
34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 1975~1995
35	일반가구의 세대구성별 백분율분포 : 1975~1995
36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 1975~95

〈表 V-3〉 계속

번호	통 계 표 명
37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등 백분율 분포 : 1970~1995
38	1일 일반폐기물 발생량 - 시도별 : 1985~1995
39	1일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량 : 1980~1995
40	대기, 수질 및 해수오염 - 주요도시별 : 1990~1995
41	사회보장예산 : 1980~1996
42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 : 1970~1995
43	연평균 경제성장률 : 1988~1995
44	환율 : 1980~1996
45	소비자 물가지수 : 1980~1996

〈表 V-4〉 追加 對象 國際 統計表

번호	통 계 표 명
01	총인구 : 1970~1995
02	남자인구 : 1970~1995
03	여자인구 : 1970~1995
04	부양비 : 1970~1995
05	평균연령 : 1970~1995
06	평균수명 - 남자 : 1970~1995
07	평균수명 - 여자 : 1970~1995
08	출생률 : 1970~1995
09	사망률 : 1970~1995
10	1인당 GDP : 1970~1995
11	GDP 대비 총사회보장비 : 1970~1995
12	GDP 대비 보건부분 공공지출 : 1970~1995
13	GDP 대비 복지부분 공공지출 : 1970~1995
14	진료활동 의사수(인구 10,000명당) : 1970~1995
15	진료활동 치과의사수(인구 10,000명당) : 1970~1995
16	입원진료 병상수(인구 1,000명당) : 1970~1995

라. 統計表 順序(案)

1996年 保健福祉統計年報의 통계표 중에서 <表 V-2>의 59개 통계표를 제외하고 <表 V-3>의 61개 통계표를 추가하여 <表 V-1>의 新分類體系에 따라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構成(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I. 人口

(1) 人口 및 人口增加

- 표 1-1. 총인구, 성비 및 인구밀도 : 1960~2030
- 표 1-2.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 1970~2020
- 표 1-3. 시·도별 인구(주민등록) : 1994~95
- 표 1-4. 6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 : 1960~95
- 표 1-5. 인구수 - 연령 5세계급 및 성별 : 1975~2000
- 표 1-6. 평균연령 및 평균수명 : 1960~2020

(2) 人口動態

- 표 1-7. 출생, 사망 및 인구증가율 : 1960~2030
- 표 1-8. 사망률 - 성 및 연령별 : 1970~94
- 표 1-9. 사망자수 - 주요사망 원인별 : 1991~94
- 표 1-10. 혼인 및 이혼 : 1970~95

II. 保健

(1) 國民健康

- 표 2-1. 식품 공급량(1인 1일당) : 1970~95
- 표 2-2. 쌀 및 육류 소비량(1인 1일당) : 1970~95
- 표 2-3. 영양 공급량(1인 1일당) : 1970~95
- 표 2-4. 한국인 영양 권장량(1인 1일당) - 연령 및 영양소별(1995년 제6차 개정)
- 표 2-6. 면허등록 영양사수 : 1975~96
- 표 2-7. 건강관리방법(15세 이상) : 1992, 1995
- 표 2-8. 암유병자수 및 유병률 - 성 및 부위별 : 1992

(2) 豫防 및 傳染病管理

- 표 2-7.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실적 - 시도별 : 1980~96
- 표 2-8. 장내(腸內) 기생충 감염률 - 기생충 종류별, 시도별 : 1971~92
- 표 2-9. 정부 가족계획 사업실적 - 시도별 : 1980~96
- 표 2-10. 제1종 전염병 발생수 및 사망자 - 전염병 종류별 : 1980~96
- 표 2-11. 제2종 전염병 발생수 - 전염병 종류별 : 1980~96
- 표 2-12.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 전염병 종류, 시도별 : 1980~96
- 표 2-13. 보건소 등록 결핵 환자수 - 시도별 : 1995~96
- 표 2-14. 보건소 신규등록 결핵 환자수 - 시도별 : 1995~96
- 표 2-15. 엑스선상 활동성 폐결핵 유병률 - 연령 5세 계급별 : 1975~95
- 표 2-16. 보건소 결핵예방 접종실적 - 시도별 : 1995~96
- 표 2-17. 보건소 결핵검진 실적 - 시도별 : 1995~96
- 표 2-18. 공항 및 해항 검역 실적 : 1980~96
- 표 2-19. 공항 및 해항 예방접종 실적 : 1980~96
- 표 2-20. 나환자 연령분포 : 1995
- 표 2-21. 보건소 나환자 등록 관리 현황 - 시도별 : 1975~96
- 표 2-22. 보건소 나환자 투약·검진실적 및 이동진료실적 - 시도별 : 1985~96
- 표 2-23. 성병 정기검진등록 관리대상자수 및 검진실적 - 시도별 : 1985~96

(3) 健康危險行爲

- 표 2-24. 주류 출고량(20세 이상 1인당) : 1970~95
- 표 2-25. 흡연인구 비율(20세 이상) : 1992, 1995
- 표 2-26. 음주인구 비율(20세 이상) : 1992, 1995

(4) 公衆 및 食品衛生

- 표 2-27. 식품위생 관계업소수 - 시도별, 업종별 : 1985~96
- 표 2-28. 공중위생 관계업소수 - 시도별, 업종별 : 1980~96
- 표 2-29. 수입식품 검사실적 - 검사내용별, 검사기관별 : 1990~96
- 표 2-30. 면허등록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수 - 등급별 : 1980~96

(5) 醫療資源

- 표 2-31. 병원 및 의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 1975~96
- 표 2-32. 병원 및 의원수 - 병·의원 종류, 시도 및 시부·군부별 : 1996
- 표 2-3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 시도별 : 1975~95

- 표 2-34. 혈액원수 - 개설기관 종류별, 시도별 : 1985~96
- 표 2-35.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수 및 수용자수 - 시도별 : 1985~96
- 제 2-36. 지정 응급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 시도별 : 1995~96
- 표 2-37. 조산수습 의료기관수, 수습조산사 정·현원 및 분탄실적 - 시도별 : 1985~96
- 표 2-38.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 1980~96
- 표 2-39.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 시도 및 시부·군부별 : 1996
- 표 2-40. 구급차 현황 : 1996
- 표 2-41. 면허 의사수 - 성별 : 1975~96
- 표 2-42. 면허 치과의사수 - 성별 : 1975~96
- 표 2-43. 면허 한의사수 - 성별 : 1975~96
- 표 2-44. 면허 또는 자격등록 약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수 : 1975~96
- 표 2-45. 자격 인정 전문의 수 - 전문과목별 : 1975~96
- 표 2-46. 면허등록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 : 1975~96
- 표 2-47. 자격등록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수 - 시도별 : 1985~96
- 표 2-48.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보건소등 제외) - 의료기관종류 및 시부·군부별 : 1996
- 표 2-49. 보건소 인력 현황 - 시도별 : 1985~96
- 표 2-50.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현황 - 시도별 : 1985~96
- 표 2-51.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합격현황 : 1975~96
- 표 2-52.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현황 : 1975~96
- 표 2-53. 전문대학 의료관련 학과 학생수 - 전공별 : 1996
- 표 2-54. 대학교 의약분야 학생수 - 전공 및 학년별 : 1996
- 표 2-55. 대학원 의약분야 석사·박사과정 학생수 - 전공별 : 1996
- (6) 醫療利用
- 표 2-56. 병원 이용현황 - 설립구분 및 환자질병 종류별 : 1975~96
- 표 2-57. 응급환자 정보센터 운영실적 : 1991~96
- (7) 藥政
- 표 2-58. 의약품, 의료용구·화장품 등 검정실적 - 시도별 : 1980~96
- 표 2-59. 의약품, 의료용구 등 판매업소수 - 시도별 : 1980~96
- 표 2-60. 면허등록 마약취급자수 - 시도별 : 1980~96
- (8) 保健産業
- 표 2-61. 식품 제조·가공업소수 - 시도별 : 1995

- 표 2-62. 의약품, 의료용구·화장품 등 제조업소수 - 시도별 : 1980~96
- 표 2-63.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 1995
- 표 2-64. 의약품, 의료용구·화장품 등 생산실적 : 1985~96
- 표 2-65. 의약품 생산실적 - 약효별 : 1996
- 표 2-66. 완제약품, 제약원료, 의료용구 및 화장품 등 수출입 : 1980~96

III. 社會福祉

(1) 一般社會福祉

- 표 3-1. 사회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 - 시설종류별 : 1985~96
- 표 3-2. 사회복지관수 - 시도별 : 1985~96
- 표 3-3. 사회복지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1985~96
- 표 3-4. 생활보호자수 - 보호종류별, 시도별 : 1980~96
- 표 3-5. 생활보호자 보호사업실적 - 사업내용별 및 시도별 : 1985~96
- 표 3-6. 대학교 사회복지분야 학생수 - 학년별 : 1996
- 표 3-7. 대학원 사회복지분야 학생수 - 과정별 : 1996
- 표 3-8.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시도별 : 1980~96
- 표 3-9. 사회복지 전문요원수 - 시도별 : 1996

(2) 公共扶助

- 표 3-10. 이재민 구호사업실적 - 재해종류별, 재원별 및 시도별 : 1980~96
- 표 3-11. 의료보호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 1980~96
- 표 3-12.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자 급여총액 : 1981~95
- 표 3-13. 생활보호자 경제활동 상태 : 1996
- 표 3-14.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주 - 보호종류 및 성별, 연령별 : 1990~96
- 표 3-15. 생활보호 가구 - 보호종류별, 주요 특성별 : 1990~96
- 표 3-16. 생활보호 가구 - 보호종류 및 주택 점유 형태별 : 1990~96

(3) 障礙人福祉

- 표 3-17. 재가 장애인수 및 출현율 - 성별, 연령별 : 1995
- 표 3-18. 장애인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 - 시도별 : 1985~96
- 표 3-19. 장애인복지 시설수 및 수용인원 - 시설종류별, 시도별 : 1991~96
- 표 3-20. 등록 장애인수 및 의무고용 준수사업체수 : 1990~95
- 표 3-21. 재가 장애인 취업률 및 취업 희망률 - 성별, 연령별 : 1995

표 3-22.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교부실적 - 시도별 : 1985~96

(4) 老人福祉

표 3-2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 : 1991~96

표 3-24. 노인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 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 :
1975~96

표 3-25. 노인 건강진단 및 취업알선 실적 - 시도별 : 1985~96

표 3-26. 경로당수 및 회원수 - 시도별 : 1992~96

(5) 兒童福祉

표 3-27.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 시도별 : 1985~96

표 3-28.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 시도별 : 1990~96

표 3-29. 아동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 :
1975~96

표 3-30. 아동상담소수 및 상담실적 - 시도별 : 1994~96

표 3-31. 아동상담 고민사항 - 시도별 : 1994~96

표 3-32.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 설립구분별·시도별 : 1990~96

표 3-33. 아동 입양기관수 및 입양 아동수 - 시도별 : 1990~96

(6) 女性福祉

표 3-34. 여성 선도보호 시설수 및 보호실적 - 시도별 : 1975~96

표 3-35. 여성회관 입소 및 수료자수 - 과정별·시도별 : 1985~96

표 3-36. 여성상담소 상담실적 - 시도별 : 1975~96

표 3-37. 모자보호 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 - 시도별 : 1975~96

(7) 浮浪人福祉

표 3-38. 부랑인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 시도별 : 1985~96

표 3-39.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 시도별 :
1985~96

표 3-40. 아동 부랑인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 시도별 : 1985~96

(8) 精神患者福祉

표 2-41.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수 및 수용자수 - 시도별 : 1985~96

IV. 社會保險

(1) 公共年金

표 4-1. 공공연금 가입자수 및 적용률 - 연금형태별 : 1980~95

- 표 4-2. 공공연금 수급권자수 - 연금형태별 : 1980~95
- 표 4-4.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시도별 : 1990~96
- 표 4-6.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자 종사 산업별, 시도별 : 1990~96
- 표 4-5.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 사업장 인원규모별, 시도별 :
1990~96
- 표 4-3. 공공연금 총급여비 및 평균 급여비 : 1980~95
- 표 4-7. 국민연금 급여 지급실적 - 급여종류별 : 1990~96
- 표 4-8. 국민연금 기금조성 현황 : 1990~96
- 표 4-9.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 1990~96

(2) 醫療保險

- 표 4-10. 의료보험 적용인구 - 보험종류별, 시도별 : 1980~96
- 표 4-1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적용인구 - 시도별 :
1980~96
- 표 4-12.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조합수 및 적용인구 - 시도별 : 1980~96
- 표 4-13. 의료보험 재정수지 현황 : 1985~96
- 표 4-14. 직장의료보험 재정수지 현황 : 1985~96
- 표 4-1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의료보험 재정수지 현황 : 1985~96
- 표 4-16.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수지 현황 : 1985~96
- 표 4-17. 의료보험 부담액 및 급여액 - 시도별 : 1985~95
- 표 4-18. 의료보험 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 1985~96
- 표 4-19. 의료보험 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보험종류별 : 1996

(3) 産災保險

- 표 4-20.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비율 : 1970~95
- 표 4-21. 산재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산업별 : 1988~95
- 표 4-22. 산재보험급여 지급건수 - 급여종류별 : 1975~95
- 표 4-23.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 급여종류별 : 1975~95
- 표 4-24. 산업재해 발생건수, 도수율, 강도율 및 만인율 : 1975~95

(4) 僱傭保險

- 표 4-25.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 1995
- 표 4-27.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 및 시도별 : 1995
- 표 4-28.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수 - 종사인원 규모 및 산업별 : 1995
- 표 4-26. 고용보험 기금운용 실적 : 1995

V. 生活環境

(1) 經濟活動

표 5-1. 취업자수 - 산업별 : 1975~96

표 5-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 1985~96

표 5-3. 1인당 월평균 임금 및 근로일수(10인 이상 사업체) - 산업별 : 1975~96

(2) 家計支出

표 5-4. 도시가구 가계지출(월평균) : 1985~96

표 5-5. 농촌가구 가계지출(월평균) : 1985~94

(3) 住宅 및 家口

표 5-6. 주택수 - 주거 부대 시설별 : 1995

표 5-7. 일반가구수 - 주택의 종류별 : 1970~95

표 5-8. 일반가구의 주택의 점유형태별 백분율 분포 : 1975~95

표 5-9. 일반가구의 핵가족·직계가족·확대가족별 백분율 분포 : 1970~95

표 5-10.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 1975~95

표 5-11. 일반가구의 세대구성별 백분율 분포 : 1975~95

(4) 家庭儀禮

표 5-13. 공설 및 법인 묘지 이용현황 - 시도별 : 1995~96

표 5-14.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현황 - 시도별 : 1994~96

표 5-15. 가정의례 업소수 - 시도별 : 1995~96

(5) 環境汚染

표 5-12. 상수도 보급률 - 시도별 : 1991~95

표 5-16. 1일 일반폐기물 발생량 - 시도별 : 1985~95

표 5-17. 1일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량 : 1980~95

표 5-18. 대기, 수질 및 해수오염 - 주요 도시별 : 1990~95

VI. 財政·經濟

(1) 豫算

표 6-1. 보건복지부문 예산관련 지표 : 1992~96

표 6-2.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 1980~96

표 6-3. 보건복지부 예산지출 현황 : 1992~96

(2) 主要 經濟指標

표 6-4.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 : 1970~95

표 6-5. 연평균 경제성장률 : 1988~95

표 6-6. 환율 : 1980~96

표 6-7. 소비자 물가지수 : 1980~96

VII. OECD 國家의 主要 保健福祉 統計

(1) 人口

표 7-1. 총인구

표 7-2. 남자인구

표 7-3. 여자인구

표 7-4. 부양비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 / 20~65세 인구)

표 7-5. 평균연령

표 7-6. 평균수명 : 남자

표 7-7. 평균수명 : 여자

표 7-8. 출생률 : 인구 1,000명당

표 7-9. 사망률 : 인구 1,000명당

(2) 社會保障費

표 7-10. 1인당 GDP

표 7-11. 총 사회보장비 - GDP대비

표 7-12.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 GDP대비

표 7-13. 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 GDP대비

(3) 醫療資源

표 7-14. 진료활동 치과의사수 - 인구 10,000명당

표 7-15. 진료활동 의사수 - 인구 10,000명당

표 7-16. 입원진료용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VI. 向後 推進課題

1. 短期推進課題

가. 保健福祉統計年報의 補完

1997년도 保健福祉統計年報에서는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통계표 중에서 行政目的에만 이용되는 통계표, 特殊目的에만 이용되는 통계표, 活用도가 낮은 통계표가 대부분 삭제되고, 保健福祉部 및 각 機關에서 생산하고 있는 統計와 OECD 國家의 統計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活用도가 높은 통계를 발굴하여 삭제된 통계표보다 많은 통계표가 추가되었다.

통계의 분류체계도 保健福祉部 室·局單位의 編制에 따른 분류체계를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機能에 따른 분류체계로 전환하였다.

1997년 保健福祉統計年報는 42년만에 처음으로 이용자 중심의 保健福祉統計年報로 개편되었으며, 이는 保健福祉統計發展史에 기록될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保健福祉統計年報의 改善 및 改編은, 제한된 인력과 1996년 保健福祉統計年報의 세부적인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완전하게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997년에는 基本體制의 구축에 중점을 두어 개선·개편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즉 1998년에는 통계표 순서의 합리적인 조정, 각 통계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항목의 추가, 기존의 통계를 가공한 새로운 형태의 統計

表 開發에 중점을 두어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보건복지 및 관련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狀況 把握, 保健福祉 政策樹立 및 評價, 政策開發研究 등에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保健福祉統計年報가 되도록 꾸준한 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報告統計의 改善

1) 改善點

일선 행정기관 및 의료기관 보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報告統計는 27種이 있으며, 이러한 報告統計는 다음과 같은 報告體系에 따라 합산·보고된다.

- ① 동읍면, 해당 기관 → 구시군, 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② 구시군, 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③ 해당 기관 → 협회 → 보건복지부
- ④ 산하 기관 → 보건복지부

報告統計의 경우 정해진 報告書式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區市郡에서는 보고받은 統計報告書를 취합·합산하여 동일한 報告書式으로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취합·합산하여 保健福祉部에 제출한다.

그런데 保健福祉部에 제출하는 단계까지는 手作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保健福祉部에서는 入力過程을 거쳐 電算集計하거나 간단한 것은 手集計하고 있다. 手作業에 의한 경우 합산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입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동안 報告統計에 대하여는 正確性 缺如가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 주로 가시적 사업실적에 관심
- ② 사업실적 위주의 과대·과소보고
- ③ 일선 보고통계 담당자 및 관리자의 통계에 대한 인식 결여
- ④ 통계작성기준의 불명확

이에 관하여 現地 確認 및 指導監督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改善方向

報告統計의 改善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는 각종 보고통계작성의 최초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내고 개선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제1단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最初作成機關의 報告統計 作成過程에 대한 實態把握
 - 작성부서, 보고항목, 제출기한, 보고절차 및 단계
 -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내용, 수집방법과 정확성, 작성방법의 타당성, 보고서식의 합리성
 - 작성 담당자의 의견, 애로 및 건의 사항
 - 시도에서 구시군(보건소)의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실태
 - 시도 보고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는 절차에 대한 실태
- ② 項目的 現實性, 報告書式의 合理性, 結果의 活用性 評價
- ③ 評價結果를 토대로 報告統計作成의 正確性 및 效率性을 도모

할 수 있는 方案의 講究

第2단계는 報告書式으로 제출하는 것을 電子郵便(E-Mail)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電子郵便으로 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면 필요한 통계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電子郵便의 이용은 市道에서 保健福祉部로 제출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고 保健福祉部에서는 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 活用方法이 정착되면 區市郡 단위까지로 확대하여 市道單位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활용방법이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최초 보고 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行政電算網, 保健福祉電算網 등의 이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2. 長期推進課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개선·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保健福祉部의 의지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과제이다

가. 新規統計의 持續的인 開發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 중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 통계와 OECD에서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통계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第1단계는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신규통계부터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家口調査에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統計廳의 社會統計調査나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國民健康 및 保健意識行態 調査에 ‘保健制度에 대한 主觀的 評價’에 관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면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醫療保險資料, 産業災害保險資料, 自動車保險資料 등을 취합하면 OECD의 기준에는 미흡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많은 診療統計를 생산할 수가 있다.

또한 保健福祉部의 報告統計書式에 OECD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2단계는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 중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 統計의 生産體系 및 方法을 研究하여 試驗調査로 가능성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OECD 요구 통계 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를 위주로 하는 것은 OECD에 대한 통계제출 목적도 있지만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어야 할 통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 長短期 改善·發展計劃 樹立 및 推進

保健福祉部는 中央政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 관한 長短期 計劃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 ① 통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 ② 신규통계의 지속적인 개발
- ③ 통계의 질적 개선

- ④ 통계의 활용도 제고
- ⑤ 시도의 보건복지통계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다. 統計業務 全擔組織 補強 및 擴大

保健福祉部 電算統計擔當官室의 조직 보강 및 확대는 다음의 순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통계담당 전담인력의 증원
- ② 통계업무 전문인력의 확보
- ③ 현재의 統計係를 국내통계계와 국제통계계로 분리
- ④ 일본 厚生省의 統計情報部와 같이 수준을 높여 局單位로 확대 개편

參 考 文 獻

- 桂勳邦·李承旭, 『保健福祉統計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
研究院, 1995.
- 保健福祉部, 『保健福祉統計年報』, 1996.
- , 『통계업무규정』, 1997.
- , 『사무분장규정』, 1994.
- 양재모·유승흡, 『국민의료 총론』, 壽文社, 1984.
- 統計廳, 『改正統計法』, 1996.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II) - 解說編』,
1995.
- 日本 財團法人 厚生統計協會, 『厚生統計要覽』, 厚生省 大臣官房 統計
情報部編, 平成 5年版.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United
States, 1995*, 1996.

附 錄

1996年度 保健福祉統計年報의 統計表 檢討結果

I. 主要指標

제1표 인구지표 ➡ 제외

- (1) 연도가 2000년까지는 10년 간격이나 그 다음 연도는 2010년이 아닌 2021년이므로 일반 이용자는 왜 2021년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2020년의 착오일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음.
 -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 각주를 달아 주어야 함.
 - 그러나 장래인구추계는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한 것이므로 기간이 멀수록 차이가 심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2) 1990년의 ‘세계, 선진국, 개도국’ 통계는 이 표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최근 연도자료로 바꾸어 국제통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연도는 1960~1990은 지금과 같이 10년 간격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부터는 1995, 2000, 2005, 201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이 통계표가 주요지표라는 성격으로 보아 ‘가임여성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도시화율(%)’의 경우 ‘도시화’의 개념 및 정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함.
- (6) 통계청에서 1996년 12월에 발간한 ‘장래인구추계’의 내용과 1997년 5월에 발간한 ‘1995년 생명표’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바꾸어 주어야 함.

제2표 주요 보건복지 지표 ➡ 제외

- (1) 의료인력관련 통계는 면허등록자 및 자격등록자수에 의한 통계이며,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와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 통계

- 를 의료인력 기본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 실제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통계로 바꾸어야 함. 국제 기준도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의 통계임.
- (2)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복지지표의 항목일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 아님에도 이러한 항목이 이 표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함.
- 예 : ① 간호조무사수 및 간호조무사 1인당 인구
 - ② 영양사수 및 영양사 1인당 인구
 - ③ 기생충감염률(회충)
 - 이러한 항목보다는 복지업무 종사자수나 의료기관 이외의 약국 근무 약사수가 더 중요함.
- (3)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이 중복 집계된 것이므로 실제 우리나라 총인구보다 많음.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모르는 이용자(특히 외국 이용자)가 볼 때에는 실제로 100%에 훨씬 미달되나 이중등록 자격자가 포함되어 100%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 : 4’의 ‘이중등록 자격자가 포함된 수치임.’을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시되고 있으며, 제도간의 이중자격자가 중복 포함된 수치임.’ 이라고 명백하게 밝혀 주어야 할 것임.
 - 앞으로는 이중자격자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적용인구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4) 보험의 ‘1,000명당 진료건수, 1건당 진료일수, 1건당 진료비, 1일당 진료비’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합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진료비청구명세서의 월별 심사결과와 진료비 지급실적에 의한 통계이므로, 일반적 통계 작성기준과는 전혀 다른 통계임.
- 약국의료보험이 포함된 통계임.
 - 의료보험통계연보의 통계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① 급여실적
 -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실적에 대하여 보험자가 확인·정산하여 확정된 현물 급여실적과 현금으로 보험자

가 지급한 현금급여 실적

② 진료실적

요양기관이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청구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의료보험연합회가 심사·처리한 실적

③ 기간

- 진료실적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였음.
- 따라서 실제 진료 연도는 1995년이나 심사처리 연도가 1997년 이면 1997년 실적으로 작성됨.

④ 산출기준

- 건수 :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심사결정건수
 - 진료비 :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금액
 - 약제비 :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청구한 총약제비중 심사결정된 금액
 - 보험자부담금(급여비) : 심사결정된 진료비(약제비)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 내원일수 :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진료를 받은 일수
 - 진료일수 : 내원일수에 투약기간을 포함한 일수
 - 수진율 : 진료건수 / 연평균 적용인구
 - 1인당 평균 수진횟수 : 내원일수 / 연평균적용인구
 - 지급월 : 청구된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가 심사처리한 월
- 현재 작성기준의 한 예를 들면, 어떤 퇴원 환자의 입원기간이 1995. 1. 25~2. 15일인 경우에 실제적인 입원건수는 1건이나 월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진료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 또한 한 의료기관에서 매달 1번씩 3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매달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진료건수는 3건으로

집계되지만, 한달에 3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건수는 1건으로 집계됨.

- 따라서 여기의 통계는 월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이며, 진료건수의 개념이 의료이용 통계에서 말하는 입원건수와 외래진료건수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5) 의약품 등 수출입에서 기준연도를 1985년도에서 1995년도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의약품 등 생산고’도 마찬가지로임.

(6) ‘의약품 등 생산고’에서 ‘의약품 등’의 범위가 애매하므로 이용자가 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의료용품·용구, 기타 위생용품 및 화장품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7) 통계표 제목은 ‘주요 보건복지지표’로 되어 있으나, 통계표의 내용에서 복지부문의 통계는 거의 없음.

- 가계 소비지출통계보다는 각종 연금보험 적용인구와 같은 통계가 수록되어야 할 것임.

제3표 보건복지 예산관련 지표

- (1) 제목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문 예산 : 1992~96

제4표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현황

- (1) 제목 →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 1992~1996
- (2) 1991년도 세출예산이 14,628억원이나 제3표에서는 1991년도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14,629억원으로 일치하지 않음.

II. 保健

제5표 영양섭취량(1인 1일당) → 삭제

- (1) 제목 → 열량,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1인 1일당) : 1980~95

- (2) 단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열량(kcal), 단백질(g), 지방(g)과 같이 통합하여 제시하면 통계표가 보다 단순하게 될 것임.
- (2) 이 統計表는 8개 年度(1975, 80, 85, 90~94)의 국민 1인당 1일 영양섭취량을 열량(kcal), 단백질(g), 지방(g)으로 나누어 각각 섭취량, 권장량, 권장량대비 섭취량 등을 수록한 통계표임.
- (3) 이 통계표에서 열량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열량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섭취량(1)	1,992	2,052	1,935	1,868	1,930	1,875	1,848	1,770
권장량(2)	2,129	2,194	2,125	2,085	2,075	2,085	2,053	2,082
(1)/(2) : %	93.6	93.5	91.1	90.0	93.1	90.0	90.0	85.0

- (4) 이 표에서 1992~1994년까지 국민 1인당 열량섭취량이 1,900 kcal도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임(1994년 1,770 kcal).
- (5) 권장열량이 매년 작성되는 것이 아님에도 매년의 권장열량이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산출된 권장량인지 알 수 없음.
- (6) 우리나라 국민이 열량권장량의 90% 정도(1994년의 경우 85%)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임.

제6표 영양사 면허등록 상황

- (1) 제목 → 면허등록 영양사수 : 성 및 연도별
- (2)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었음을 각주로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함.

제7표 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1995년 제6차개정)

- (1) 제목 → 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 (1995) - 영양소 및 월령·연령별
- (2) 통계표 안에 영아, 소아, 남자, 여자, 임신부·수유부의 내역을 구분하기 위한 선이 있어 오히려 복잡해 보이며, 연령 다음에 세로선이 없어 연령도 통계항목으로 보여지므로 허술한 느낌이 들음.
- 첫 번째 란의 영아, 소아, 남자, 여자 등의 구분과 두 번째 란의 연령 구분을 통합하여 표시하고 가로의 선을 없애는 방법을 시도해 볼 필

요가 있음.

- (3) 영아의 월령이 0~4, 5~11로 되어 있어 일반인은 1년이 12달인데 12개월은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
- 「5개월 미만」, 「5~12개월」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임.
- (4) ‘체중’과 ‘신장’이 어떤 뜻의 신장과 체중인지 알 수 없음. 이에 관한 설명의 각주가 필요함.
- (5) ‘임신부’와 ‘수유부’의 경우 통계치 앞에 ‘+’ 기호가 있는데 일반 이용자는 빨리 이해하지 못하므로 ‘해당 연령의 권장량에 이 수치만큼 더 추가됨.’이란 각주가 필요함.

제8표 제1종 전염병 발생률·치명률

- (1) 제목 → 제1종 전염병 발생수 및 사망자수 - 전염병 종류별 : 1980~96
- (2) 통계 수치가 없는 빈 칸이 대부분임(61% - 180개중 109개).
- (3) 발생수, 발생률, 사망수, 사망률의 4개 항목 중에서 발생률과 치명률의 2개 항목은 삭제하여도 활용도에는 영향이 없으며, 표가 간단하게 됨.
- 이와 같이 하면 보기에 불편한 양면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됨.

제9표 제2종 전염병 발생률

- (1) 제목 → 제2종 전염병 발생수 : 전염병 종류 및 연도별
- (2) 발생률은 삭제하여도 일반적인 활용도에는 영향이 없으며, 표가 간단하게 됨.
- 이와 같이 하면 보기에 불편한 양면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됨.

제10표 제1종 전염병환자 월별 발생수 및 사망수 ➡ 제외

- (1) 이 통계표는 제8표의 내용 중에서 발생률과 치명률의 2개 항목을 제외하고 그 대신 ‘월’을 추가하여 작성한 통계표임.
- (2) 통계 수치가 없는 빈칸이 대부분임(74% - 1,260개 중 933개).
- 이러한 통계표는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의 통계표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1표 제1종 전염병환자 시도별, 발생수 및 사망수 ➡ 제외

- (1) 이 통계표는 제10표에서 ‘월’을 ‘시·도’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2) 통계 수치가 없는 빈칸이 대부분임(80% - 1,440개 중 1,154개).
 - 이러한 통계표는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의 통계표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2표 제1종 전염병환자 월별, 시·도별 발생수 및 사망수 ➡ 제외

- (1) 제11표의 9개 연도 중에서 1995년도의 시·도별 발생수 및 사망수를 월별로 세분한 것이며, 제10표의 내용 중에서 1995년도의 월별 발생수 및 사망수를 시·도별로 세분한 것과도 같음.
- (2) 통계 수치가 없는 빈칸이 대부분이며(89% - 1,632개 중 1,511개), 분량이 4쪽이나 됨.
 - 이러한 통계표는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의 통계표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3표 제1종 전염병환자 연령 계층별 발생수 및 사망수 ➡ 제외

- (1) 양쪽(좌측과 우측)면의 상단과 하단의 2개 표 중에서 상단의 통계표이며, 좌측면만 사용하여도 편집이 충분하나 양쪽면을 사용하였음.
- (2) 제12표에서 시도를 삭제하고 ‘연도’를 ‘연령 5세 계급’으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3) 통계 수치가 없는 빈칸이 대부분임(55% - 140개 중 77개).
 - 이러한 통계표는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의 통계표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통계연보에 반드시 수록하여야만 한다면 제8표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을 삭제하고 1995년도 자료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14표 제1종 전염병환자 연령 계층별 발생률 및 치명률 ➡ 제외

- (1) 양쪽(좌측과 우측)면의 상단과 하단의 2개 표 중에서 하단의 통계표이며, 좌측면만 사용하여도 편집이 충분하나 양쪽면을 사용하였음.
- (2) 제13표의 발생수와 사망수를 발생률과 치명률로 제시한 통계표임.

- (3) 통계 수치가 없는 빈칸이 대부분이며(89% - 140개 중 124개), 빈 칸수는 제13표의 77개와 같아야 하나 47개가 더 많은 것은 단위 미만인 경우 '0.0'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해당 수치없음'의 '-'의 표시를 하였기 때문임.

- 특수 목적으로도 활용도가 거의 없는 통계표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15표 주요전염병 예방접종실적

- (1) 제목 →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 1980~96, 시도별

제16표 공항 및 해항 검역 상황

- (1) 제목 → 공항 및 해항 검역 실적 : 1980~96, 검역소별
- (2) 1975, 1985, 1990~1995년의 검역실적과 1995년의 13개 검역소별 실적이 수록되어 있는 통계표임.
- (3) 검역소별 실적은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한된 목적의 자료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17표 공항 및 해항 예방접종상황

- (1) 제목 → 공항 및 해항 예방접종 실적 : 1980~96
- (2) 검역소별 실적은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한된 목적의 자료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18표 결핵환자 보건소 등록상황

- (1) 제목 →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수 : 연도별, 시도별
- (2)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에서 각각 「기타」가 중간에 있으므로 맨 마지막으로 옮겨야 함.

제19표 결핵 신환자 보건소등록 상황

- (1) 제목 → 보건소 신규등록 결핵환자수 - 연령계급별 : 1994~95, 시도별
- (2) 통계표 상단에 있는 양성환자와 음성환자의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함.

제20표 결핵예방접종 및 검진실적(보건소)

- (1) 다음의 2개 표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 ① 결핵 예방접종실적 : 1995~96, 시도별
 - ② 결핵 검진실적 : 1995~96, 시도별
- (2) 검진실적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검진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3) '검진'의 '검사건수'는 객담검사건수를 X-선 검사건수보다 먼저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X-선 사진검사를 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하여 객담검사를 하므로 X-선 검사건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 (4) 'BCG접종'과 '검진' 사이에 경계선이 필요함.
- (5) 통계표 상단에 있는 BCG접종과 검진실적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함.

제21표 BCG 연령별 접종률 ➡ 제외

- (1) 제목 → BCG 접종률(반흔보유율, 0~29세) : 연령 5세 계급 및 연도별
- (2) 통계표의 제목은 접종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실적이 아니고 매 5년 주기의 결핵실태조사 결과임.

제22표 결핵 연령별 양성반응률 ➡ 제외

- (1) 제21표의 조사수 중에서 BCG 비접종자(반흔이 없는 사람)에 대한 튜버큘린반응검사 결과의 양성반응률을 제시한 통계표임.
- (2) 이러한 검사결과는 결핵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한 부분의 검사결과에 불과하고 학문적으로만 필요한 자료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23표 엑스선상 활동성 폐결핵 연령별 유병률

- (1) 제목 → 엑스선상 폐결핵 환자수 및 유병률 - 연령 5세 계급별 :
1975~95

제24표 결핵균 양성폐결핵 연령별 유병률 ➡ 제외

- (1) 통계표의 제목은 너무 학문적이므로, 일반 이용자는 어떤 내용의 통계표인지 알 수 없음.

- (2) 제23표의 조사수(X-선 수검자수)에 대한 엑스선 사진 관독결과의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 각각 우두점액 채취(2개)와 객담을 동시에 채취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의 결핵환자에 관한 통계표임.
- 그러나 이 표에서 수검자수를 나타내는 조사수 제23표에서 수검자수를 나타내는 조사수와 같으며, 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
 - 이러한 검사결과는 결핵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한 부분의 검사결과에 불과하고 학문적으로만 필요한 자료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25표 성병 정기검진대상자(등록관리자) 현황 및 사업실적

- (1) 제목 →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수 및 검진실적 : 1985~95, 시도별
- (2) 검진 실적은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실시한 검사건수임’을 각주로 달아 주어야 이용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제26표 에이즈 항체검사 현황 ➡ 제외

- (1) 제목 → 에이즈 항체검사 실적(보건소) : 대상 및 연도별, 시도별
- (2) ‘성병검진대상’, ‘일반검진대상’, ‘검사희망’, 및 ‘기타’ 수검자가 각각 어떤 특성의 집단인지 알 수 없음.
- 각주에서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함.
- (3) 이 통계가 어떤 내용의 통계인지를 알아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나, 어떤 내용의 통계인지 분명하지 않음.
- ㉠ 보건소의 검사건수인지, ㉡ 보건소와 어떤 특정 의료기관의 검사건수인지, ㉢ 보건소와 병의원 전체의 검사건수인지를 알 수 없음.
 - ‘성병검진대상’, ‘일반검진대상’, ‘검사희망’, 및 ‘기타’의 검사기관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 수 없음.
 - 통계의 대상 및 작성방법 등 어떤 내용의 통계인지를 알 수 있는 각주를 달아 주어야 함.
- (4) 각 수검집단별로 ‘발견수’를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도 발견 경로를 아는

데 도움이 됨.

- (5) 활용도가 없는 통계표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27표 연도별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

- (1) 제목 → 에이즈 감염자 발견수, 사망자수 및 생존자수 : 1985~95
 (2) '연도별 감염자'는 '감염자 발견수'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3) 제9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즉 에이즈 환자발생 건수도 추가하여 주면 전체 관리현황을 나타내는 통계표가 됨.

제28표 나환자 등록현황 및 역학적 현황; 발생, 유병, 사망

- (1) 제목 → 보건소 나환자 등록 관리현황 : 19975~95, 시도별
 (2) 처음 항목이 「등록관리자수」이므로 이 항목의 수치를 우리나라의 나환자수로 이해하기 마련임(예 : 1995년 - 21,285명).
 - 그러나 「등록관리자수」 외에 맨 마지막의 2개 항목인 「요추적 대상자수」와 「등록자 총수」가 있으며, 「요추적대상자수」는 우리나라의 총 나환자수가 아닌 것으로 알지만 「등록자 총수」가 사실상의 우리나라 나환자인 것으로 알게됨(표를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됨).
 - 따라서 「등록자 총수」가 「관리대상자」와 「요추적 대상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등록자 총수」를 처음 항목으로 하여야 함.
 (3) 등록관리 나환자의 사망률, 신환발생률은 활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기서의 사망률은 등록관리자 100명당 사망률이므로, 활용상의 의미가 거의 없음.
 - 여기서 신환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등록관리자의 사망률이므로, 활용상의 의미가 거의 없음(신환자는 모두 등록관리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음).
 (4) 등록관리 나환자 유병률은 총인구를 분모로 하고 등록관리 나환자를

분자로 한 유병률이므로 의미가 없는 유병률이며, 따라서 이 표에서 삭제하여야 함.

- 그 대신 현황과약에 더 필요한 항목(예 : 성별 등록자수)의 추가가 바람직함.

- (5) 성별 등록관리자수는 관련 행정 및 관리담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므로 이 표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6) 등록관리자와 요추적대상자의 차이를 각주로 달아 주면 이용자가 쉽게 현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7) 관리구분의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의 관리내용에 관한 각주가 있으면, 이용자가 관리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8) 등록관리자의 거주형태에서 '재가와 정착'의 세부 내용은 제31표 참조, 수용의 세부 내용은 제30표 참조'라는 각주가 있으면, 이용자가 표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됨.
- (9) '등록관리자'란 용어보다는 '관리대상자'가 더 현실적인 용어임.

제29표 나병원 및 나장애시설 설립현황 ➡ 제외

- (1) 이 표는 통계표가 아님.
- (2) 제외시켜야 함.

제30표 나병원 및 나장애시설 환자동태 ➡ 제외

- (1) 통계표의 제목만을 보면 '나병원 및 나장애시설'이 수용기관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비수용기관도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음(통계표 내용을 보아야만 비수용기관이 제외됨을 알 수 있음). 또한 환자동태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음.
 - 제28표의 재가, 정착, 수용 등록관리자 중에서 수용 등록관리자에 대한 세부통계표임.
- (2) '입원자 현황(Status of In-patient)'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 통계표의 시설이 모두 입원진료기관으로 이해됨.
 - 그러나 모두 입원진료기관은 아니므로 '수용자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임.

- (3) ‘애락보건병원’이란 기관은 없으며, ‘애락보건병원 부속의원(요양기호 - 37322192, 전화 053-5640701)’인 것으로 보여짐. 확인이 필요함.
- (4) 복지병원(대한 나관리협회 부속, 경기도 의왕시 소재, 가톨릭재단의 성라자로원과는 다른 기관)은 명단에 없음. 수용시설이 아니라 제외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음.
- (5) 애양재활병원의 경우 동일한 재단에 애양재활병원, 평안양노원, 직업재활보도소의 3개 기관이 있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애양재활병원 : 나환자 및 일반환자의 수술후 입원 치료 및 외래진료 의료기관으로 판단됨(피부과 전문병원이며, 수용·진료목적이 아니면 수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 ㉡ 평안양노원 : 노인 나환자 수용시설로 복지시설임(운영기금이 애양재활병원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짐).
 - ㉢ 직업재활보도소 : 나장애인 및 일반장애인 복지시설 성격의 직업훈련시설로서 수용시설 여부는 알 수 없음.

제31표 재가 및 정착 나환자 현황 ➡ 제외

- (1) 이 통계표에서는 정착, 재가의 순서로 되어 있으나 제28표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음.
- (2) 이 통계표는 관련 행정 및 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이며, 통계연보에 수록할 정도로 중요한 통계표가 아니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전체적인 현황은 제28표만으로 충분함).

제32표 나환자 거주현황 및 신환 발견 ➡ 제외

- (1) 제목 → 나환자의 연령 : 1995
- (1) 이 통계표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몇 년도 통계인지를 알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 전체 나환자에 관한 통계표로 잘 못 알기 쉬움. 그러나 여기서의 거주형태는 등록관리대상자에 국한한 것임.
- (2) 신환자는 94명밖에 안되는데, 백분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백

분율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이 통계표는 관련 행정 및 관리 담당자에게만 필요한 자료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4) 연령별 자료가 필요하다면 ‘전체 나환자수 및 신환자수 - 성, 양성·음성 및 연령 별’의 통계표를 수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제33표 투약, 검진 및 이동진료반 활동 현황

- (1) 제목 → 보건소 나환자 투약·검진 실적 및 이동진료 실적 : 1985~95, 시도별
- (2) 통계표 제목을 보면 누구에게 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음. 대상이 나환자라 하더라도 전체 나환자가 대상은 아닐 것이므로 그 대상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수정 제목은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전체 나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였음).
- (3) 차량운행거리는 통계연보에 수록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접촉자검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각주가 필요함.
- (5) 향나투약관리에서 환자참여, 정밀검진, 대리참여, 전달투약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각주가 필요함.
- (6) 이동진료반의 출장방문지역수와 가정방문지역수의 차이에 관한 각주가 필요함.

제34표 장내 기생충 검사 현황

- (1) 제목 → 장내(腸內) 기생충 감염자율 : 기생충 종류 및 연도별, 시도별
- (2) 제목과 내용을 보아도 검사대상이 되는 집단을 알 수가 없음.
- (3) 이 통계표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결과의 자료를 수록한 것임.
 - 시도별로는 표본조사구수가 근본적으로 적어 표본오차가 크기 때문에 시·도별 통계는 사용 불가능하므로 이 통계표에서 제외시켜야 함.
- (4) 충란양성자수, 양성률 등의 용어는 학술용어이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따라서 기생충감염자수, 감염률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5) ‘검사결과’는 ‘종류별 감염자수(중복 감염의 경우 각각 별도 집계)’로 바꾸어야 총감염자수가 종류별 감염자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알게 됨.
- (6) %의 숫자가 4.8, 0.03, 0.009 등으로 소수점 아래의 단위수가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0.5미만인 경우에는 ‘0.0’으로 바꾸어 주어야 함.
- (7) ‘기타’의 내용에 관한 각주가 필요함.

제35표 가족계획 사업실적

- (1) 제목 → 정부 가족계획 사업실적 : 1980~95, 시도별
- (2) 불임시술과 자궁내 장치시술은 보건소,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이외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표의 실적이 보건소,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 보건소와 전의료기관, 정부의 4가지 중에서 어느 경우의 실적인지 알 수 없음.
- 범위를 제목에 명시하던가 또는 각주로 달아 주어야 함.

제36표 모자보건 사업실적

- (1) 제목 →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실적 : 1980~96, 시도별
- (2) ‘모자보건관리’를 ‘모자보건관리 등록자수’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임산부’로, ‘영유아 등록관리’를 ‘영유아’로 바꾸면 보다 명백한 항목명이 될 것임.

제37표 성인병 등 검진사업 실적 ➡ 제외

- (1) 통계표의 제목이 성인병을 위주로 한 검진사업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이 그런지는 알 수 없음.
- (2)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인지 알 수 없음.
- 몇 종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실적으로 성인병을 위주로 집계한 것으로 보여짐.
- (3) 특정 질환 하나만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의 대

부분의 검진은 질환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짐. 즉 1사람이 2개의 질환(예 : 당뇨병 및 간염)과 관련 될 때 어떤 질환으로 분류하였는지 알 수 없음.

- 질환별 검진실적의 합계가 총검진실적으로 되어 있음.

- (4) 이 통계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사업 실적통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38표 구강보건사업실적 ➡ 제외

- (1) 통계표의 내용은 이동진료실적이거나 제목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음.
- (2) 대상집단이 다양할 것이나 그 대상집단을 알 수 없음.
- (3) 이 통계표는 관련기관의 실적통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39표 소아발육치 ➡ 제외

- (1) 통계표 제목만 보면 어떤 내용의 통계표인지 알 수 없음. 발육치가 무슨 뜻인지 이용자는 이해하기 곤란함.
- (2) 통계표 제목에는 소아로 되어 있으나 연령을 보면 소아만이 아님.
- (3) 연령이 2~2.5, 2.5~3, 3~3.5 등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함.
- (4) 1965, 1975, 1985년의 3개 연도 자료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활용도가 거의 없음.

제40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현황

- (1) 제목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수 및 수용자수 : 연도별, 시도별

제41표 공중위생 관계업소 현황

- (1) 제목 → 공중위생 관계업소수 - 시도별 : 1980~95, 업종별
- (2) 위생관계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규가 있다면, 각주로 밝혀주는 것이 바

람직함.

- (3) 전국의 결혼예식장수가 138개소뿐이라는 것은 일반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강원도에는 1개소뿐이고 충청남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결혼예식장의 개념과 여기서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어야 함
- (4) 학원의 경우도 86개소뿐이며, 5개 도에는 학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42표 공중위생관계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 제외

- (1)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 (2) 이 통계표는 관련기관의 실적통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43표 공중위생관계업소 위생감시 실적(업종별) ➡ 제외

- (1) 이 통계표는 제42표에서 ‘시·도’를 ‘업종’으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2) 이 통계표도 제42표와 마찬가지로 관련기관의 실적통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44표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면허등록 상황

- (1) 제목 → 면허등록 위생사수 및 위생시험사수 : 1975~95

Ⅲ. 食品

제45표 수입식품검사실적

- (1) 제목 → 수입식품 검사실적 - 검사형태별 : 1990~95

- (2) 검역소별 실적은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한된 목적의 자료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46표 식품위생관계업소 현황

- (1) 제목 → 식품위생 관계 업소수 - 시도별 : 1985~95, 업종별

제47표 식품접객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 제외

- (1)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 (2)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48표 식품접객(조리, 집단)업소 위생감시실적(업종별) ➡ 제외

- (1) 제47표에서 ‘시·도’를 업종으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2) 제47표와 마찬가지로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49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 제외

- (1)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 (2)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50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감시 실적(업종별) ➡ 제외

- (1) 제49표에서 ‘시·도’를 업종으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2) 제49표와 마찬가지로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51표 식품판매운반 처리업소 위생감시 실적(시·도별) ➡ 제외

- (1) 식품의 범위와 판매, 운반, 처리의 내용을 각주로 달아주는 것이 이용자의 이해를 위하여 바람직함.
- (2)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 (3)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52표 식품판매운반 처리업소 위생감시실적(업종별) ➡ 제외

- (1) 제49표에서 ‘시·도’를 업종으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2) 식품의 범위와 판매, 운반, 처리의 내용을 각주로 달아주는 것이 이용자의 이해를 위하여 바람직함.
- (3) 제49표와 마찬가지로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53표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감시실적(시·도별) ➡ 제외

- (1) 제목과 통계표 내용을 보아도 대상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대상 제품을 수정제목에서는 식품으로 전제하였음.
- (2)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54표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감시실적(업종별) ➡ 제외

- (1) 제53표에서 ‘시·도’를 업종으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2)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
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IV. 醫政

제55표 의사 면허등록상황

- (1) 제목 → 면허등록 의사수 및 한지의사수 - 성별 : 1975~95
- (2) 한지의사에 관한 설명의 각주가 필요함
- (3)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56표 치과의사 면허등록상황

- (1) 제목 → 면허등록 치과의사수 및 한지치과 의사수 - 성별 : 1975~95
- (2) 한지치과의사에 관한 설명의 각주가 필요함
- (3)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57표 한의사 면허등록상황

- (1) 제목 → 면허등록 한의사수 및 한지한의사수 - 성별 : 1975~95
- (2) 한지한의사에 관한 설명의 각주가 필요함
- (3)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58표 약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 및 분야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등록 상황

- (1) 제목 → 면허 또는 자격등록 약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수 :
1975~95
- (2)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59표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 자격등록 현황

- (1) 제목 → 자격등록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수 : 1985~95. 시도별
- (2)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60표 전문의 자격등록 상황

- (1) 제목 → 자격인정 전문의수 - 전문과목별 : 1975~95
- (2) 각주번호 없이 '신경과, 정신과 및 치료방사선과와 진단방사선과는 1983년부터 분과되었음.'이란 설명이 되어 있음.
- 1975 및 1980년도의 해당 통계치에는 각주 번호를 달아주고 각주는 '신경과와 정신과, 진단방사선과와 치료방사선과는 각각 '83년에 분리되었음'이라고 하여 주는 것이 뚜렷함.
- (3)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61표 의료기사 등 면허등록 현황

- (1) 제목 → 면허등록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 : 1975~95
- (2) 해외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제62표 의료인 등 국가시험 실시 현황

- (1) 다음의 2개 표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 ①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합격현황 : 1975~95
 - ②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 1975~95

제63표 의료기관 분포상황

- (1) 제목 → 병원 및 의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 1975~95, 시도별
- (2)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도 의료보험 취급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임(의료기관 특성분류 : 병의원, 보건의료기관, 약국).
- (3)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근 의사가 있고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부속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제64표 의료기관종별, 시·군부별, 의료기관 분포현황

- (1) 제목 → 병원 및 의원수 - 시도, 의료기관 종류 및 시부·군부별 : 1995

- (2) 제63표의 9개 연도 중에서 1995년도의 통계를 시부·군부의 분류를 추가하여 작성한 통계표임.
- (3)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도 의료보험 취급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임(의료기관 특성분류 : 병의원, 보건의료기관, 약국).
- (4)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근 의사가 있고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한 기타의 부속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제65표 의료기관별 병상수

- (1) 제목 →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 1980~95, 시도별
- (2)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 병상수도 포함되어야 함.
- (3) 치과의원에 입원진료 병상이 있다는 것은 착오인 것으로 판단됨(1980, 1985, 1993, 1995)
 - 1980년도의 5개 병상, 1985년도의 11병상, 1993년도의 3개 병상, 1995년도의 29개 병상(1995년도의 병상수는 경기도의 병상수임)
- (4)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의 경우에 1995년도 병상수는 577개 병상이나 되며, 대부분 일반병상을 입원병상으로 보고한 경우로 보여짐.
 - 1997년도 통계연보의 경우에는 병상수가 가장 많은 2개 시·도와 가장 적은 2개 시·도의 경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한의원의 경우에도 미찬가지임).

제66표 의료기관종별, 시·군부별, 병상 분포현황

- (1) 제목 →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 시도 및 시부·군부별 : 1995
- (2) 제65표의 8개 연도 중에서 1995년도의 통계를 시부·군부로 세분화하여 작성한 통계표임.
- (3)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 병상수도 포함되어야 함.
- (4) 치과의원에 입원진료 병상이 있다는 것은 착오인 것으로 판단됨(모두

경기도의 병상수입).

- (5)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의 경우에 1995년도 병상수는 577개 병상이나 되며, 대부분 일반병상을 입원병상으로 보고한 경우로 보여짐.
 - 1997년도 통계계연보의 경우에는 병상수가 가장 많은 2개 시·도와 가장 적은 2개 시·도의 경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한의원의 경우에도 미찬가지임.

제67표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및 약사분포 현황 ➡ 제외

- (1)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도 의료보험 취급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에 의료인력도 포함시켜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임.
- (2) 의료기관수와 병상수의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가 있으나, 의료인력의 경우에 연도별 통계표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추가하여야 할 것임.
- (3) 이 통계표는 제69표에서 시부 및 군부를 제외한 통계표에 불과하므로 제외시켜야 함.

제68표 시·도별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및 약사 분포현황

- (1) 제목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보건기관 제외) - 시·도별 : 1995
- (2) 이 통계표는 제67표에서 '기관종류'를 '시·도'로 바꾸어 작성한 통계표임.
- (3)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도 의료보험 취급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에 의료인력도 포함시켜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임.

제69표 의료기관종별, 시·군부별 의료인력 및 약사 분포현황

- (1) 제목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보건기관 제외) - 의료기관 종류 및 시부·군부별 : 1995
- (2)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도 의료보험 취급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에 의료인력도 포함시켜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임.

- (3) 이 통계표에서 ‘시부·군부’만 삭제하면 제67표와 같아지므로 제67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70표 병원환자 취급현황

- (1) 제목 → 병원 이용현황 - 설립구분 및 환자종류별 : 1995
- (2)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 취급하여 보건의료원 이용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3) ‘일반, 전염, 결핵, 정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반병원, 전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으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일반환자, 전염병환자, 결핵환자, 정신질환자’와 같이 명백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 (4) 이 통계표의 외래환자의 경우 ‘연인원(No. Outpatients)’이란 항목이 있으며, 제127표의 외래의 경우 ‘실인원(No. Outpatients), 연인원(No. Outpatients Visits)’이 있는데, 표간에 국문 및 영문 용어가 서로 달라 혼동이 됨.
- (5) 이 통계표에서 ‘설립구분과 및 환자질병 특성’을 병원종류로 바꾸어 작성한 별도의 통계표도 활용도가 높은 통계표이므로, 이 통계표의 생산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임.

제71표 의료기관종별 입원·외래 환자수 및 구성비 ➡ 제외

- (1) 이 통계표는 1992년도 환자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이용자의 오해가 없도록 두주 또는 각주로 설명이 있어야 함.
- (2) %의 경우 대부분 소수점 아래 1단위로 제시하였으나 반올림 한 결과 0.1미만의 경우에는 0.02, 0.008 등과 같이 소수점 아래 2단위 또는 3단위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어 보기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단위 미만의 경우에는 0.0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보건(지)소 입원환자 백분율을 0.159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0.2로 제시하여야 함(외래의 경우 5.05로 되어 있음).
- (4) 입원은 1992. 8. 26. 24:00시 현재 입원 중인 환자수이며, 외래는 1992.

8. 26일의 1일간 외래환자수임을 각주로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함.

(5) 1994년도 환자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여야 함.

제72표 상병분류별·성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 제외

- (1) 이 통계표는 1992년도 환자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이용자의 오해가 없도록 두주 또는 각주로 설명이 있어야 함.
- (2) 분모가 되는 인구에는 군인이 포함되고 분자가 되는 환자수에는 군인이 제외된 수진율임을 밝혀 주어야 함.
- (3) 이 통계표는 1992년도 환자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표인데, 이 통계표보다 퇴원환자(1개월간) 상병에 관한 통계표가 보다 활용도가 높은 통계표이므로 수록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필요가 있음.
- (4) 1994년도 환자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여야 함.

제73표 의료기관종별, 거주 시·도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 제외

- (1) 이 통계표는 1992년도 환자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이용자의 오해가 없도록 두주 또는 각주로 설명이 있어야 함.
- (2) 분모가 되는 인구에는 군인이 포함되고 분자가 되는 환자수에는 군인이 제외된 수진율임을 밝혀 주어야 함.
- (3) 이 통계표는 1992년도 환자조사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인데, 시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통계생산을 전제로 하여 표본의료기관을 추출한 것이 아니며, 시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표본기관수가 너무 적어 표본오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연보에 수록할 정도의 통계표가 아님.

-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74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분포현황

- (1) 제목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 1975~95, 시도별
- (2) 보건의료원이 보건소에 포함된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포함되었다면 각주를 달아 주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건소 앞에 보건의료원을 추가하여야 함.

제75표 보건소 인력현황

- (1) 제목 → 보건소 인력 현황 : 1975~95, 시도별
- (2) 보건의료원이 보건소에 포함된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포함되었다면 각주를 달아 주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건의료원 인력에 관한 별도의 통계표를 작성하여야 함.
- (3) 의료기관 종별 의료인력에 관한 통계표(예 : 제69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통계표로 바꾸는 것이 활용도가 높게 되므로, 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제76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 (1) 제목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현황 : 1975~95, 시도별
- (2) 공중보건에 관한 통계가 없음.

제77표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 (1) 제목 → 지정 응급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 시도별 : 1995
- (2) 각주 번호가 없이 '응급병상수는 응급의료센터 30병상, 종합병원 및 지정병원 15병상 확보 기준 수치임.'란 주가 있는데, 응급의료센터의 '병상수'에는 각주 번호 '1'을, 종합병원과 응급의료 지정병원의 '병상수'에는 각주 번호 '2'를 부여하고, 각주에서 확보기준 병상수를 밝혀주는 것이 원칙임.

제78표 응급환자 정보센터 운영실적

- (1) 제목 → 응급환자 정보센터 운영실적 : 1991~95, 시도별

제79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 ➡ 제외

- (1) 위반건수와 처리건수가 같은 경우, 위반건수가 처리건수보다 많은 경우, 위반건수가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 착오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되므로 이에 관한 주를 달아 주어야 함.
- (2) 각주번호 없이 설명된 '1992년도 이전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은 본표(제 80표)현황과 같으며, 1993년도부터는 통계보고서식변경에 따라 통계표

제80-1표(의료인 등), 제80-2표(의료기관)로 구분, 별도 수록함'에서 제80표는 제79표, 제80-1표는 제79-1표, 제80-2표는 제79-2표가 되어야 함.

- (3)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79-1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 의료인 등 ➡ 제외

- (1) 위반건수와 처리건수가 같은 경우, 위반건수가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 착오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되므로 이에 관한 주를 달아 주어야 함.
 (2)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3)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79-2표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 의료기관 ➡ 제외

- (1)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2)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80표 조산수습의료기관 현황

- (1) 제목 → 조산수습 의료기관수, 수습조산사 정·현원 및 분만실적 :
1985~95, 시도별

제81표 혈액원 개설현황

- (1) 제목 → 혈액원수 - 개설기관 종류별 : 1985~95, 시도별

제82표 헌혈 및 혈액공급현황

- (1) 제목 → 헌혈자수 및 혈액공급 내역 : 1985~95, 시도별
- (2) ‘인구대비 헌혈률’의 산출에서 분모의 인구수에는 군인이 포함되었으며, 분자의 헌혈자수에는 군인이 제외되었다면, 이를 각주에서 밝혀 주어야 함.

V. 藥政

제83표 마약취급자 면허등록현황

- (1) 제목 → 면허등록 마약취급자수 - 취급자 구분별 : 1980~95, 시도별

제84표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현황

- (1) 다음의 2개 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의약품, 의료용품·용구 및 화장품 등 제조업소수 : 1980~95, 시도별
 - ② 의약품, 의료용품·용구 및 화장품 등 판매업소수 : 1980~95, 시도별

제85표 의약품 등 검정실적

- (1) 제목 → 의약품, 의료용품·용구 및 화장품 등 검정실적 : 1980~95, 시도별
- (2) 제목이 ‘의약품 등 검정실적’으로 되어 있으나 ‘의약품 등’이란 의약품 이외의 의료용품, 의료용구 등도 포함되는 것이나, 내용을 보면 의약품만의 검정실적인지 의료용품 등이 포함된 검정실적인지 알 수 없음.
- (3)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으로 세분하여야 활용가치가 있음.

제86표 의약품 등 생산현황

- (1) 제목 → 의약품, 의료용품·용구 및 화장품 등 생산실적 - 1985~95

제87표 의약품 약효별 생산현황

- (1) 제목 → 의약품 생산실적 - 약효별 : 1995
- (2) 1990~95년의 연도별 총생산실적은 제86표에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표에서는 제외하고 1995년도의 약효별 생산실적만 수록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88표 의약품 등 수출·입현황

- (1) 제목 → 완제약품, 제약원료, 의료용구 및 화장품 등 수출입 : 1980~95
- (2) 다음과 같이 항목순서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임.
현재 : ① 제약원료, ② 완제약품, ③ 화장품, ④ 한약제, ⑤ 의료용구
변경 : ① 제약원료, ② 한약제, ③ 완제약품, ④ 의료용구, ⑤ 화장품

제89표 약사감시상황(시·도별) ➡ 제외

- (1) 처분건수에서 ‘기타’라는 항목이 끝에서 2번째에 있으나, 맨 끝에 있어야 함.
- (2) 1995년도의 경우 위반건수(3,482)와 처분건수(3,564)가 다르므로, 이에 관한 각주가 필요함.
- (3)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90표 약사감시상황(업체별) ➡ 제외

- (1) 처분건수에서 ‘기타’라는 항목이 끝에서 2번째에 있으나, 맨 끝에 있어야 함.
- (2) 연도별 통계는 제89표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품목 및 업종이 31개나 되어 보기에 복잡하므로 연도별 자료의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3)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통계연보에 수록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통계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VI. 社會福祉

제91표 사회복지시설 수용현황(총괄)

- (1) 제목 → 사회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 : 1985~95, 시설종류별
- (2) 시설종류의 ‘기타(결핵 및 나장애)’라는 항목은 ‘결핵’과 ‘나장애’로 분

리하여야 활용가치가 있음.

제92표 사회복지관 설치현황

(1) 제목 → 사회복지관수 - 설립구분별 : 1985~95, 시도별

제93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현황

(1) 이 통계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신규배치실적에 관한 통계인데, 이러한 배치실적보다는 실제 종사자수가 더 필요한 통계임.

(2) 따라서 다음의 통계표로 바꾸어야 함.

- 제목 :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현원 - 시도별 : 1995 ◀ 교체

제94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상황

(1) 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1975~95, 시도별

제95표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1) 제목 → 생활보호 대상자수 : 보호종류별 : 1980~1995, 시도별

(2) 계획치인지 실적치인지 확인하여 계획치인 경우는 실적치로 바꾸어 주어야 함.

제96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분포

(1) 제목 →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주의 성 및 연령 - 가구구분별 : 1990~95

(2) 연도별 자료는 가구주의 성별이 제시되었으나 연령별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제시토록 하여야 함.

(3) 생활보호 대상자의 가구주의 연령이 '0~2세'인 경우가 35명, '3~17세'인 경우가 13,553명임.

- 그러나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8~9세 이하 특히 0~2세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구주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설명의 각주가 있어야 함.

제97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실적

(1) 제목 → 생활보호사업실적 - 사업종류별 : 1985~95, 시도별

제98표 이재민 구호사업 실적

- (1) 제목 → 이재민 구호사업실적 및 자원 : 1980~95, 시도별
- (2) 구호금액에서 '기타 민간'의 경우에는 1975, 1980, 1985년도에는 통계가 제시되었으나 1990년도부터 제시되지 않았는데,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없어서 제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감.
- 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제99표 부랑인시설 수용현황(총괄)

- (1) 제목 → 부랑인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현황(총괄) : 1985~95, 시도별

제100표 부랑인시설 수용현황(성인)

- (1) 제목 → 성인부랑인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현황 : 1985~95, 시도별

제101표 부랑인 시설 수용현황(아동)

- (1) 제목 → 부랑 아동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현황 : 1985~95, 시도별

제102표 장애인 복지시설별 현황

- (1) 제목 → 장애인 복지시설수 및 수용인원 - 시설종류별 : 1990~95, 시도별

제103표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현황

- (1) 제목 → 장애인 복지수용시설 입소, 퇴소 및 수용현황 : 1985~95
- (2) 이 통계표의 시설수는 제102표의 총시설수에서 비수용시설(종합복지관 및 단종복지관)수를 뺀 결과의 시설수와 일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수용인원의 경우는 일치함).

제104표 장애인 보장구 교부실적

- (1) 제목 →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교부실적 : 보장구 종류별 : 1985~95, 시도별

제105표 사회복지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실적

- (1) 제목 → 사회복지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 1985~95

VII. 家庭福祉

제106표 노인건강진단 및 취업알선실적

- (1) 제목 → 노인건강진단 및 취업알선 실적 : 1985~95, 시도별
- (2) 1990년도의 경우 1차 건강진단 실적과 2차 건강진단 실적을 별도로 제시되었으나 ‘주 : 1)’에는 1차 건강진단에 2차 건강진단을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990년도의 각주 번호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제107표 노인복지시설 수용현황

- (1) 제목 → 노인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 : 1975~95, 시도별
- (2) 노인복지시설 종류에서 ‘실비 및 유료시설’은 양로시설인지 노인요양시설인지 알 수 없음.
 - 유료 양로시설이라면 ‘노인요양시설’은 무료 양로시설인지 구별이 되지 않음.

제108표 경로당 이용 현황

- (1) 제목 → 경로당수 및 회원수 : 1992~95, 시도별
- (2) 경로당에 자주 가는 경우와 가끔 가는 경우 등으로 가는 횟수가 다양한데, ‘이용노인수’는 어떤 정의에 의한 것인지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막연한 의미의 ‘이용노인수’라면 의미가 없는 자료이며, ‘회원수’라면 ‘이용노인수’를 회원수’로 바꾸어야 함.
 - 수정 제목은 회원수를 전제로 한 것임.

제109표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 (1) 제목 →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 1985~1995, 시도별

제110표 아동복지시설 수용현황

- (1) 제목 → 아동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 - 시설종류별 : 1975~95, 시도별

- (2) 기타 수용시설의 경우 ‘주 : 1) 자립지원 및 교호시설임(1975, 1980년도는 탁아시설, 부랑아 시설이 포함됨 자료임)’의 내용에 따라 항목명을 ‘기타’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자립지원시설 및 교호시설’로 바꾸고, 각주에는 ‘1975, 1980년도는 탁아시설, 부랑아 시설이 포함됨 자료임’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제111표 아동상담소 상담실적

- (1) 이 통계표는 다음의 2개 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아동상담소수 및 상담실적 : 1994~95, 시도별
 - ② 아동상담소 상담사항 및 조치결과 : 1994~95, 시도별
- (2) ‘기타’라는 항목이 4개(발생유형, 발생배경, 상담내용, 상담조치결과)가 있는데, 가급적 ‘기타’의 내용에 관한 각주를 달아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됨

제112표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현황

- (1) 제목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 1990~95, 시도별
- (2) 발생유형별이란 항목명을 ‘발생유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음.
- (3) ‘보호내용별’이란 항목명을 ‘보호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명백한 표현이라고 봄.
- (4) 보호내용의 ‘기타’에는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의 각주가 있으면 일반 이용자의 현황 파악이 쉬워질 것임.

제113표 아동입양 현황

- (1) 제목 → 아동 입양기관수 및 입양 아동수 : 1990~95, 시도별,
- (2) 입양기관수는 입양아동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기관수인지를 알 수 없음(예를 들면 1995년도 국내 입양기관수가 23개 기관인데, 국내 입양아동 1,025명과는 어떤 관계의 기관수인지 알 수 없음).
- 입양기관수의 성격에 따라 표제목을 재수정·보완하게 됨.

제114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 (1) 제목 →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 설립구분별 : 1990~95, 시도별

제115표 여성회관 운영상황

- (1) 제목 → 여성회관 입소 및 수료자수 - 과정별 : 1985~95, 시도별
- (2) '연말 현재 재소자수'가 전년말 재소자수, 입소자수, 수료자수, 탈락자수로 산출이 되지 않음.
- (3) 입소자수의 '기타'에 각주 번호 '1'을 달아 주어야 함(각주 번호 표시 항목이 없음에도 '주 1'이 있는 것은 착오임).

제116표 부녀상담 실시현황

- (1) 제목 → 여성상담소수, 상담실적 및 조치결과 : 1975~95, 시도별
- (2) 조치 결과의 '기타'란 항목의 내용에 관한 각주를 달아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됨.

제117표 모자보호시설 수용현황

- (1) 제목 → 모자보호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 : 1975~95, 시도별

제118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상황

- (1) 제목 → 여성선도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취직실적 : 1975~95, 시도별

제119표 새마을 부녀회조직 현황

- (1) 제목 → 새마을부녀회 및 회원수 : 연도별, 시도별

제120표 가정의례업소 및 단속 현황 ➡ 제외

- (1) 제목 → 가정의례업소수 : 1994~95, 시도별
- (2) 단속건수는 없고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만 있어 위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음.
- (3) 감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실적의 연도간 비교, 시도간 비교 등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사업실적의 통계임.
- (4) 따라서 단속실적은 내부 행정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위사업의 실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121표 공설 및 사설법인 묘지 현황

- (1) 제목 → 공설 및 법인 묘지 이용현황 : 1994~95, 시도별
- (2) 공설 묘지 및 사설법인 묘지에 관한 사항만 수록되어 있어 공설과 사설을 합한 내용은 합산하여야만 알 수 있어 이용에 불편함
- (3) 다음과 같이 3개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1개 쪽에 1개 통계표 수록).
 - 묘지면적 및 매장면적(공설 및 법인) : 1994~1995, 시도별
 - 묘지면적 및 매장면적(공설) : 1994~1995, 시도별
 - 묘지면적 및 매장면적(법인) : 1994~1995, 시도별
- (4) 1994년도 및 1995년도의 2개 연도 통계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의 통계도 추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5) 1995년 사망원인통계연보(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집계)에 의하면 1995년도 발생 신고사망자는 240,019명이므로 여기서 화장건수(53,837)를 제외한 186,182건을 매장이라고 보면, 공설 및 사립묘지 매장건수(44,041)는 전체 매장건수의 1/4에 불과함.
 - 따라서 전체 매장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 매장에 관한 통계도 수록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필요가 있음.

제122표 화장장 및 납골당 현황

- (1) 제목 → 화장장 및 납골당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 1994년도 및 1995년도의 2개 연도 통계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의 통계도 추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VIII. 年金保險

제123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제외

- (1) 전체 의료보험적용인구는 1989년부터 2중자격자가 포함된 통계치가 수록되어 있으나 '계'의 경우에는 2중자격자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의료

보장적용인구도 수록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보장적용인구율도 제시하여야 함.

- (2) 1985, 1989, 1990, 1992~1995년도 통계를 수록하였으므로 1991도 통계가 누락되었음. 따라서 1991년도 통계를 추가되어야 함(1989년이 제외되고 1991년이 추가되어야 함(1989. 7. 1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되었다고 해서 1989년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1991을 제외한 것이라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제123표~132표. 단 제128-1표 비해당)
- (3) 직종의료보험은 1989. 6. 30자로 폐지되었음에도 ‘지역 및 직종의료보험’이란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어야 함. 그리고 ㉠ 1980년도의 적용인구(65)는 1989. 6. 30자로 폐지된 임의지역의료보험 통계임을 각주로 밝혀주고, ㉡ 1985년도 적용인구(1,570)에는 1989. 6. 30일자로 폐지된 직종의료보험 및 임의지역의료보험이 포함된 것임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 (4) 의료보호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3종(의료부조)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것이므로 2종에 포함시키고 그 사실을 각주로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함.
- (5) 1989. 6. 30일자로 해산된 직종의료보험과 임의지역의료보험을 지역의료보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보다는 직종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에 포함시키고 임의지역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에 포함시키면 통계의 작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제123표~제125표).
- (6) 1995년의 의료보호 인구가 1,989(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1,990(천명)의 착오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7) 의료보험 종류별 적용인구는 제124표에도 수록되어 있고, 의료보호의 경우에는 132표에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표는 제외시켜도 좋음.

제124표 의료보험 적용인구

- (1) 제목 → 의료보험 적용인구 - 보험종류별 : 1980~95, 시도별

- (2) 제123표의 경우와 같이 1991년도 통계가 누락되었음.
- (3) 1989년도부터 이중자격자가 포함되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 (4) 의료보험 적용률은 이중등록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활용가치가 없는 통계임. 따라서 삭제되어야 함.
- (5)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1980년도 세대수와 피보험자수인 16,050과 65,367에 괄호가 되어 있고, 1985년도의 피보험자수 375,242 밑의 1,195,180에도 괄호가 되어 있으며, 각주에는 괄호 내의 수치는 직종·임의지역 의료보험 수치라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표시방법보다는 다음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임.
- (6) 1980년도의 16,050과 65,367은 괄호를 제외한 수치를 제시하고, 1989. 6. 30자로 폐지된 임의지역의료보험 자료임을 각주로 달아 줌.
 - 1985년도의 괄호로 추가된 피보험자수 1,195,180은 삭제하는 대신에 375,242에 합산하여 1,570,422로 제시하고, 각주로 1989. 6. 30자로 폐지된 직종의료보험 및 임의지역의료보험이 포함되었음을 밝혀 줌.
 - 1985년도 군지역과 시지역의 경우에는 임의지역의료보험을 포함시키고 이 사실을 각주로 달아줌.

제125표 의료보험 조합 및 적용인구

- (1) 제목 →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조합수 및 적용인구 : 1980~95, 시도별
- (2) ‘지역·직종조합’의 경우 직종의료보험조합은 1989. 6. 30일자로 해산되었으므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어야 함.
 - 그리고 ㉠ 1980년도 적용인구는 임의지역의료보험 자료임을 각주로 밝혀주고 ㉡ 1985년도 적용인구는 1989. 6. 30자로 해산된 직종의료보험 및 임의지역의료보험이 포함된 수치임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 (3) 1989년도부터 이중자격자가 포함되었음을 각주로 밝혀 주어야 함.
- (4) 1991년도 통계가 누락되었음.

제126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의료보험 적용인구

- (1) 제목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군인의료보험 적용인구 : 1980~95, 시도별

- (2) 1991년도 통계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하여야 함.
-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의 3종류에서 ‘기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 ‘기타’는 공무원에서 군인을 분리한 것이라면 ‘군인’이라고 명시하여 주어야 하며,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기타’를 공무원에 포함시켜야 함.
- (4) 공무원 연금수급권자는 공무원 의료보험에서 1989. 7.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되었으므로 1985년에는 공무원의료보험에 포함됨.
 - 따라서 1985년도의 ‘총계’ 밑에 연금수급권자를 괄호로 별도 제시하였는데, 별도로 제시할 필요없이 합산한 수치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27표 의료보험대상자 진료실적 ➡ 제외

- (1) 양국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포함여부를 알 수 없음.
- (2) 이 통계표의 진료관련통계는 요양기관이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청구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의료보험연합회가 심사 처리한 월별 실적에 의한 통계이므로, 일반적 통계 작성기준과는 전혀 다른 통계임.
 - 의료보험연합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제2표 주요 보건복지지표’의 (4)항을 참조
- (3) 이 통계표의 진료관련통계는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제128표 의료보험대상자 질병 17대 분류별 수진건수 ➡ 제외

- (1) 이 통계표는 진료비청구명세서 월별 심사실적을 질병 17대 분류별로 집계한 진료건수임(1995년도부터 질병 17대 분류가 21대 분류로 개편되어 1995년도부터 21대 분류를 적용하여 별도의 통계표를 작성하게 됨).
- (2) 표 127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이 통계표의 통계는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제128-1표 의료보험대상자 질병 21대 분류별 수진건수 ➡ 제외

- (1) 표 127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이 통계표의 통계는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제129표 의료보험 급여상황

- (1) 다음의 2개 표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① 의료보험 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 1985~95
 - ② 의료보험 급여실적 - 보험종류 및 급여종류별 : 1995
- (2) 여기서의 건수는 진료비지급명세서 심사실적의 건수의 개념이므로 의료이용통계에서 사용하는 입원건수와 외래진료건수의 건수와는 다르다는 설명이 있어야 함.

제130표 의료보험 관련지표 ➡ 제외

- (1) 제127표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이 통계표의 통계는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제131표 의료보험 재정현황

- (1) 다음의 3개 표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 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의료보험 재정수지현황 : 1985~95
 - ② 직장의료보험조합 재정수지현황 : 1985~95
 - ③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수지현황 : 1985~95
- (2) '3. 지역의료보험'의 '가. 조합별 재정현황'에서 '조합별'이란 개별 조합을 뜻하는 것이므로 통계표 내용과는 다른 뜻의 제목임.
- 따라서 '조합별 재정현황'을 통계표의 주된 내용에 따라 '보험료 징수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3) '3. 지역의료보험'의 '나. 재정수지현황'에서 수입계정의 보험료를 부과액으로 제시하였는데 부과액과 징수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징수액이 타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 이 표는 하나의 제목에 3개 종류의 의료보험을 분리하여 각각 소제목의 통계표를 제시하였으나, 처음부터 3개의 통계표로 분리하여 각각 통

계표 번호를 부여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32표 의료보호 사업실적

- (1) 제목 → 의료보호 사업실적 - 의료보호 종류별 : 1980~95, 시도별
- (2) '수혜율'이라는 개념이 명백하지 않음.
 - 의료보호 대상자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인지, 의료보호 대상자중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인지, 또는 다른 개념의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3) 1980 및 1985에 각주번호가 없어 주에서 설명한 내용('89년까지는 2차 진료기관의 외래진료건수를 입원으로 분류하였으나 '90년 진료실적부터 입원진료건수에서 제외시켰음)을 읽어보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임. 따라서 1980 및 1985년의 경우에는 각주 번호를 달아 주는 것이 합리적임.
- (4) 대상자는 연말 기준이며, 실인원 및 연인원은 진료비 지급연도 기준임을 명시해 주어야 이용자가 통계를 오용하지 않게 됨.
- (5) 외래의 경우 실인원과 연인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계된 것인지에 따라 용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6) 243쪽의 의료부조는 1994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2종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각주를 달아 주는 것이 합리적임(폐지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제133표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순위별 진료실적; 입원 ➡ 제외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순위별 진료실적; 외래 ➡ 제외

- (1) 이 통계표에는 입원과 외래에 관한 통계표가 제목을 달리하여 함께 수록되어 있음. 즉 제목은 다른데 통계표 번호는 같음.
- (2) 양국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포함여부를 알 수 없음.
- (3) 이 통계표의 진료관련통계는 요양기관이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청구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의료보험연합회가 심사 처리한 월별 실적에 의한 통계이므로, 일반적 통계 작성기준과는 전혀 다른 통계임.

- 의료보험연합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제2표 주요 보건복지지표’의

(4)항을 참조

- (4) 이 통계표의 진료관련통계는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5) 표 127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이 통계표의 통계는 의료이용통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제134표 국민연금 종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 (1) 제목 →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 1990~95, 시도별
- (2) 통계표 제목에서 ‘종별’이란 용어보다는 ‘가입형태’가 통계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
- (3)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정의에 관한 각주를 달아 주는 것이 일반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임.
- (4) ‘지역가입자’에 각주번호를 부여하고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의 각주를 달아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바람직함(납부예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5) 납부예외자는 소분류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가입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제135표 국민연금 업종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 (1) 제목 → 국민연금 가입자수 : 산업분류별 : 1990~95, 시도별
- (2) 주에 각주번호 없이 설명된 내용(지역가입자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되었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켰음) 중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음.
 - 이 설명은 각주 번호가 없지만 1995년도에 국한된 설명으로 판단되며, 1995년도의 경우에 총가입자수는 제134표(납부예외자 제외)의 총가입자수와 같으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었다면 이 통계표의 총가입자수가 제134표의 가입자수 보다 많아야 할 것임.

제136표 국민연금 사업장 규모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 (1) 제목 →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수 및 가입자수 - 종업원수별 : 1990~95, 시도별

제137표 연금 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 (1) 제목 → 국민연금 급여 지급실적 - 급여 종류별 : 1990~95, 시도별
- (2) 특례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각주로 달아주는 것이 일반이용자의 이해에 도움이 됨.

제138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 (1) 제목 →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 1990~95,
- (2) 월별 누적통계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행정목적에만 필요한 것임)

제139표 국민연금 기금조성 현황

- (1) 제목 → 국민연금 기금조성 현황 : 1990~95
- (2) 월별 누적통계치는 삭제하여야 함.

IX. 其他 國內 統計

제140표 연도별 성별 총인구

- (1) 제목 → 총인구, 성비 및 인구밀도 : 1975~2020
- (2) 성비 및 인구밀도를 추가하는 것을 전제한 제목임.
- (3) 1960, 1965, 1970년도의 통계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통계청의 신인구추계(1996)에 따라 변경된 통계치를 바꾸어 주되, 1995년과 1996년 사이에는 '추계치'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하면 1995년까지의 인구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으나 1996년부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됨.

제141표 인구구조

- (1) 제목 →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 1995~2020

- (2)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추가하여야 함.
- (3) 1960, 1965, 1970년도의 통계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통계청의 신인구추계(1996)에 따라 변경된 통계치를 바꾸어 주되, 1996년과 1996년 사이에는 ‘추계치’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 이렇게 하면 1995년까지의 인구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으나 1996년부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됨.

제142표 인구추계 및 증가율

- (1) 제목 → 출생, 사망 및 인구증가율 추이 : 1960~2030
- (2) 통계청의 신인구추계(1996)에 따라 변경된 통계치를 바꾸어 주되, 1996년과 1996년 사이에는 ‘추계치’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하면 1995년까지의 인구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으나 1996년부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됨.

제143표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 (1) 1975~1990년까지 5년간격으로 각 시도별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인구(한국인 인구, 외국인 인구)를 수록하였으나, 대구와 인천은 198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시도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니었으며, 광주와 대전은 1985년 당시에 시도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니어서 해당 통계치가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활용도가 거의 없는 통계표임.
- (2) 자료의 출처에 관한 설명에서 첫 번째 줄에는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2.”이며, 두 번째 줄에는 “1970, 1975, 1980, 1985년 자료는 센서스 인구임”으로 되어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이용자는 혼동을 하게 됨.
 - 1990년부터 「인구주택센서스」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인구주택총조사」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주민등록에 따른 최근 년도의 시도별 인구가 보다 활용도가 높으므로 다음의 표로 바꿈.

- 제목 : 주민등록 인구 - 시도별 : 1994~1995 ◀ 교체

제144표 6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

- (1) 자료의 출처에 관한 설명에서 첫 번째 줄에는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2.”이며, 두 번째 줄에는 “1970, 1975, 1980, 1985년 자료는 센서스 인구임”으로 되어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이용자는 혼동을 하게 됨.
 - 1990년부터 「인구주택센서스」를 공식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제141표(인구구조)와 제144표(6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에서 1980년과 1990년의 전국 인구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예 : 이 표의 인구는 인구총조사결과의 인구이므로 제141표의 인구와 차이가 있음.
- (3) 행정구역개편으로 활용도가 거의 없게된 다음의 2개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부 인구중 서울 인구비율
 - 시부 인구중 6대 도시 인구비율

제145표 시부 및 군부인구 ▶ 제외

- (1) 1994년까지는 시의 행정구역 내에는 동만 있었으나 1995년부터 행정구역으로 직할시 내에 군도 포함되었으며(예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반시의 경우 읍·면도 포함되었으므로(예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및 죽산면), 1994년까지의 시부·군부의 개념과 1995년부터의 시부·군부의 개념이 다름.
- (2) 따라서 이 표는 일단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146표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1975~2000)

- (1) 총인구 - 성 및 연령 5세계급별 : 1975~2000

- (1) 276쪽, 278쪽, 280쪽의 표에는 연령 5세계급이 명시되지 않고 통계치만 수록되었음.
- (2) 구성비를 포함하여 7개 쪽에 걸쳐 1975, 1980, 1985, 1990~2000년의 14개 연도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나 구성비는 제외하고 1975, 1985, 1995~2000년까지 8개 년도의 성 및 연령별 인구만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47표 출입국 현황 ➡ 제외

- (1) 한국인의 출입국자수와 외국인의 출입국자수를 수록한 통계표이므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
- (2) 첫 번째 항목명이 「입국자 총수」로 되어 있으나 통계의 내용은 입국자수와 출국자 수의 합계이므로 「총 출·입국자수」로 바꾸어야 함.
- 실제로 이 항목은 삭제하여도 통계의 이용에는 관계가 없음.
- (3)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입국자수는 비율로서의 의미가 약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출국(총수 및 내국인)과 입국(총수 및 외국인)으로 분류된 것을 한국인(출국, 입국)과 외국인(입국, 출국)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제148표 경제활동인구

- (1) 제목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 성별 : 1985~96

제149표 17대 분류에 의한 성·연령별 사망수(분류가능)

- (1) 이 표에서 사인 분류불능 건수는 제외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통계치는 의미가 없으며, 「분류불능」항목을 추가하여야 전체 사망신고건수가 되어 완전한 통계표가 되는 것임.
- 이 때의 제목에서는 괄호 내의 설명이 삭제되어야 함.
- (2) 이 표보다는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자수」에 관한 통계표가 더 활용도가 높음. 따라서 다음의 통계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목 : 사망신고에 의한 사망자수 - 주요 사인별 : 1991~94 ◀ 교체

제150표 산업별 상용 종업원 월평균 임금 및 근로일수

- (1) 제목 → 1인당 월평균 임금 및 근로일수(상용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 산업별 : 1975~96
- (2) 제목에는 월평균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표 안의 항목명은 「임금총액」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제목의 「임금」을 「급여」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임.
- (3) 1992까지의 산업분류는 8개 분류이었으나, 1993년부터 12개 분류로 확대되었으므로 1개의 통계표를 2개의 통계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51표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 (1) 제목 → 도시가구 가계지출(월평균) : 1985~96
- (2) 제목에는 소비지출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비소비지출도 있음.
- (3) 금액을 「천원」단위로 표시하면서 소수점 아래 1단위까지 제시하였으므로 수치를 보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음.
- (4) 통계표 좌측 위의 두주는 「단위 : 명, 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통계표에는 「명」과 관계되는 통계치가 하나도 없음.

제152표 산업별 취업자

- (1) 제목 → 취업자수 - 산업별 : 1975~96
- (2) 양면 편집으로 되어 있으나 단면 편집이 바람직함.
- (3) 제148표(경제활동인구)의 다음에 와야 하나 분리되어 있음.

제153표 의약계 대학원 학과별 학생수(1995학년도)

- (1) 제목 → 대학원 의약분야 석사·박사과정 학생수 - 성 및 전공별 : 1994.
3. 1.
- (2) 양면 편집으로 되어 있으나 단면 편집이 바람직함.
- (3) 연구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54표 의약학계 대학(교) 학과별 학생수(1995학년도)

- (1) 제목 → 대학교 의약계열 학생수 및 졸업생수 - 학과 및 성별 : 1994.
3. 1

(2) 졸업생 중 취업자와 입대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55표 의료관계 전문대학 학과별 학생수(1995학년도)

- (1) 제목 → 전문대학 보건관련 학과 학생수 - 성 및 과별 : 1994. 3. 1
- (2) 졸업생 중 취업자와 입대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56표 사회복지관계 대학 학과별 학생수(1995학년도)

- (1) 제목 → 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학생수 - 학과 및 성별 : 1994. 3. 1
- (2) 졸업생 중 취업자와 입대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57표 사회복지관계 대학원 학과별 학생수(1995학년도)

- (1) 제목 → 대학원 사회복지분야 학생수 : 학과 및 성별 (1994. 3. 1)
- (2) 연구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입학상황에서 지원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58표 소유형태별 가구수

- (1) 제목 → 일반가구수 - 주택의 점유형태별 : 1975~95

제159표 주거 부대시설별 주택수

- (1) 제목 → 주택수 - 부대시설별 : 1975~95
- (1) 제목에는 부대시설별 주택수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부대시설이 아닌 난방방법(시설)이며, 주택수가 아닌 가구수로 되어 있음.
- (2) 내용을 제목과 일치하도록 전면 교체하여야 함.

제160표 상수도보급률

- (1) 제목 → 상수도 보급률 : 1975~95, 시도별
- (2) 총인구, 1일 총급수량의 2개 항목이 추가되어야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음.

X. 國際 統計

1. 國際統計로는 16개 統計表(제161표~제176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1990년 전후의 統計로서 活用價値가 없는 統計表임(1980년대 통계표 - 1개 표, 1990년 전후 통계표 - 12개 표).
2. 16개 통계표에 수록된 52개 국가 중에는 1번만 수록된 나라가 7개국이며, 16개 통계표에 모두 수록된 나라는 3개국뿐이다. 1번만 수록된 국가 중에는 콩고,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연방, 스리랑카, 모리셔스,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는 수록대상 국가의 선정에 어떤 기준이 없이 다른 보고서의 통계표를 그대로 옮겼다는 결과가 됨.

국가	횟수	국가	횟수	국가	횟수
파키스탄	1	이라크	4	태국	10
사우디아라비아	1	그리스	4	싱가포르	11
러시아연방	1	인도	5	스페인	11
스리랑카	1	스위스	5	브라질	11
모리셔스	1	칠레	5	영국	13
콩고	1	홍콩	5	뉴질랜드	13
인도네시아	1	오스트리아	6	오스트레일리아	13
아일랜드	2	이집트	6	이탈리아	14
아이슬란드	2	핀란드	6	네덜란드	15
폴란드	2	이스라엘	6	프랑스	15
유고슬라비아	2	이란	6	캐나다	15
대만	2	중국	8	스웨덴	15
체코슬로바키아	3	노르웨이	8	독일	15
터키	3	덴마크	8	미국	16
룩셈부르크	4	아르헨티나	9	한국	16
포르투갈	4	멕시코	9	일본	16
필리핀	4	말레이시아	9		
벨기에	4	헝가리	10		

3. 따라서 현재의 16개 국제 통계표는 모두 제외시키고 활용도가 높고 현실적인 최근의 통계표를 추가하여야 함.

4. 다음은 특수한 경우의 통계표를 선정하여 설명한 것임.

제161표 인구지표의 국제비교

- (1) 1982~1988년 통계임.
- (2)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는 활용도 거의 없는 항목이며, 안정인구(安定人口)란 용어가 적합한 것임.
- (3) 성비의 영문 표기는 'Sex ratio'로 하여야 하나 'Females per 100 males'로 잘못 되어 있음.

제169표 의료종사자수

- (1) 12개 국의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수 및 10만명당 비율을 제시한 표임.
- (2) 표제목에는 의료종사자수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면허(간호사의 경우 자격)등록 의료인력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게 마련임.

제175표 에너지 소비량 및 국민영양 공급량

- (1) 이 표에는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고체, 액체, 가스, 전력)과 국민 1인당 영양공급량(공급열량 - kcal, 단백질 섭취량 - g)이 수록되어 있음.
- (2) 여기서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석탄·액화가스·전력과 관계되는 것이고, 영양공급량은 음식섭취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성질이 전혀 다른 통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